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자유무역협정집행과), 042-481-7968

관세청고시 제2006-16호(2006.3. 2)	(일부개정)관세청고시 제2014- 42호(2014. 4.24)
관세청고시 제2006-36호(2006.9. 1)	(일부개정)관세청고시 제2014-103호(2014.11.20)
관세청고시 제2007-14호(2007.6. 1)	(일부개정)관세청고시 제2015- 68호(2015.12.29)
관세청고시 제2008-21호(2008.7.15)	(전부개정)관세청고시 제2016 -63호(2016.12.27)
관세청고시 제2009- 2호(2009.1.26)	(일부개정)관세청고시 제2017- 79호(2017.12.29)
관세청고시 제2009-67호(2009.8.20)	(일부개정)관세청고시 제2019- 29호(2019. 7. 1)
관세청고시 제2010-21호(2010.2.10)	(일부개정)관세청고시 제2019- 68호(2019.12.20)
관세청고시 제2010-86호(2010.3.29)	(일부개정)관세청고시 제2020- 08호(2020. 3. 2)
관세청고시 제2010-81호(2010.6.10)	(일부개정)관세청고시 제2021- 84호(2021.12.31)
관세청고시 제2012-21호(2012.10.4)	(일부개정)관세청고시 제2022- 17호(2022. 5. 6)
관세청고시 제2013- 45호(2013. 5.31)	(일부개정)관세청고시 제2022- 58호(2022.12. 1)
관세청고시 제2013- 50호(2013. 6.11)	(일부개정)관세청고시 제2023- 37호(2023. 4.27)
관세청고시 제2013- 72호(2013.10.11.)	(일부개정)관세청고시 제2024- 00호(2024. 0.00)
관세청고시 제2014- 14호(2014. 1.24)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산지확인"이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관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증명서발급기관"이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서 규정한 발급기관을 말한다.
3. "생산자"란 협정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면서 생산에 종사하는 자연인 및 법인을 말한다.
4. "원산지조사"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우리나라가 체결한 협정·조약, 법에 따라 수

출입물품의 원산지,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5. “지정 정보통신망”이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또는 관세청 FTA포털(<http://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을 말한다.
6. “소액물품”이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제1호의 과세가격이 미화 1천 달러(협정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협정에 따른다)이하로서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의 물품을 말한다.
7. “원산지소명서”란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시 첨부하는 서류로서 해당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기 위해 원산지결정기준, 주요 생산공정, 사용된 원재료 등을 소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8.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이란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구축·운영하고 있는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되는 정보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협정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거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 제2장 협정관세의 적용

### 제1절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에 관한 절차

**제4조(적용대상)** ①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물품의 수량(이하 “적용수량”이라 한다)을 선착순 방식으로 배정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물품
2.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물품

② 제1항 각 호의 물품은 「관세법」 제154조에서 정하는 보세구역에 장치한 이후 수입신고(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포함한다)한 물품으로 한다.

**제5조(선착순 방식 수량별 차등협정관세물품의 배정절차)** ①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수량에 도달하는 날의 전날까지 수입신고된 물품: 선착순으로 수입신고하는

물품의 수량에 적용

2. 적용수량에 도달한 날에 수입신고된 물품: 남은 적용수량을 수입신고된 수량에 비례하여 각각 배정
  3. 제2호에 따른 배정 이후 수입신고시점과 신고수리시점의 물량차이 등으로 적용수량이 발생하는 경우: 적용 수량에 대해 제2호의 방식에 따라 배정
-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적용수량을 배정받은 날 이후에는 배정받은 수량보다 수입신고 오류 등을 사유로 수량이 증량하더라도 증가분에 대해서는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6조(배정에 따른 신고사항의 정정)** ① 세관장은 제5조에 따른 배정수량을 수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수입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9조에 따라 세액정정 및 보정을 하여야 한다.

**제7조(잔여수량의 게시)** ①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목별 적용수량
2. 품목별 배정수량
3. 품목별 남은 적용수량

② 관세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수량을 지정 정보통신망에 배정절차가 완료되는 날까지 게시하여야 한다.

## 제2절 특정물품의 원산지확인

**제8조(환적 또는 일시장치물품 등의 원산지확인 방법)** ① 세관장은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국제우편물은 주소기표지 또는 우편송장을 제출받아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

1. 계약상대국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전체 운송경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선하증권(B/L) 등 운송서류 일체
2.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추가적인 가공 또는 작업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관세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 하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4. 개별 협정에서 별도로 정한 서류

② 수입자는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한 물품에 대해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는

때에는 세관장이 원산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혼합 보관된 액체화물 등의 원산지확인 방법)** ①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원유, 곡물 등 액체화물(이하 “액체화물 등”이라 한다)이 국내 보세구역 내 하나의 저장시설에서 비체약당사국의 액체화물 등과 혼합 보관된 경우에는 그 액체화물 등의 원산지와 수량은 원산지증명서와 선하증권의 수량에 따른다. 다만, 선하증권상의 수량과 실제 수입된 수량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수입된 수량을 우선 적용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확인하는 경우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

③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액체화물 등이 규칙 제2조제1호가목의 우리나라 영역에 도달하기 전에 비체약국 액체화물 등과 혼합 보관되는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 제3절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의 신청 및 적용

**제10조(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① 수입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2.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라 협정관세율과 관세율 구분부호가 기재된 수입신고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수입물품이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적용의 적용 여부 심사 물품(이하 “사전 협정관세 심사 물품”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3호의 물품인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만 제출할 수 있다.

1. 원산지증명서(세관장이 원본을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본을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이미지화 한 것 또는 별표 1의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스탬프를 날인한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다)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3. 국제운송 관련 서류
4. 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공정명세서(수입자가 제출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5. 수입물품의 생산 또는 원재료의 구입·생산 관련 증빙서류(수입자가 제출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 제출은 「관세법」 제327조제2항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전자신고등(이하 “전자신고등”이라 한다)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전자신고등에 따른 전자문서는 원본으로 본다.

**제11조(신청서류 확인)** 세관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협정관세 적용대상 품목 여부
2. 원산지과 협정관세율 및 관세율 구분부호 일치 여부
3. 협정관세적용신청서가 작성방법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4.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직접운송 관련서류 구비 여부
5. 그 밖에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2조(원산지증빙서류 제출요구)**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수입신고서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의 원산지가 다른 물품
2. 품목번호와 원산지결정기준이 부합하지 않은 물품
3. 제3국 선적물품 등 직접운송 위반 우려물품
4. 물품의 특성, 수출국의 산업구조 등을 고려하여 원산지증빙서류 제출대상 품목으로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
5. 그 밖에 원산지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완요구서를 수입자에게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서류제출 변경 요구
2.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요구
3. 보완기간(규칙 제21조제2항의 기간으로 한다)
4. 보완을 요구하는 이유

③ 수입자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서를 통보받은 때에는 제2항제3호의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서에 원산지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된 정보가 전자적으로 교환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 중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 ④ 수입자는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이미지화 한 것 또는 별표 1의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스탬프를 날인한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 ⑤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로 제11조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즉시 협정관세를 적용한 수입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⑥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또는 제11조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곤란한 때에는 수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관의 원산지조사부서에 원산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산지조사 의뢰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이후에 한다.
- ⑦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원산지증빙서류의 경미한 하자)** ①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효력 전체를 부인하지 않는다.

- 1. 오·탈자 등 경미한 오류가 있으나 물품의 원산지 등 실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 2.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의 경미한 오류를 송품장, 무역계약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의 보완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소액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신청)** 소액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은 수입자가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간이하게 할 수 있다.

- 1. 수입신고서 19번(‘원산지증명서 여부’)란에 ‘X’ 표시
- 2. 수입신고서 46번(‘원산지’)란에 상품의 원산국 국가부호 기재
- 3. 수입신고서 50번(‘세율’)란에 FTA관세율 구분부호 기재

**제15조(소액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확인)** ① 세관장은 제14조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1. 협정에서 정하는 소액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11조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
- ② 영 제4조제3항제1호 단서에서 ‘수입물품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물품을 분할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2. 입항일을 기준으로 같은 날짜에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두 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제16조(동종·동질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면제 물품)** ① 영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별표 2의 동종·동질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면제물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
  2.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된 물품
  3.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발행된 송장 물품
- ②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관세탈루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요구, 제출, 수입신고의 수리, 원산지조사 의뢰 및 협정관세의 적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7조(사전 협정관세 심사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절차)** ① 세관장은 사전 협정관세 심사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8조제4항의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제11조 각 호의 사항
  2. 협정관세 적용신청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3. 협정 및 규칙 제15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적정 여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적정 여부
-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물품의 원산지 및 협정관세 적용요건이 충족함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③ 규칙 제6조제1항제2호의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사실 통보 및 통관보류 등의 절차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52조 및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8조를 준용하여 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할 수 있다.
- ⑤ 통관부서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사전 협정관세 심사 물품의 원산지 및 협정관세 적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입자의 주소지를 관할

하는 세관의 원산지조사부서장에게 원산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규칙 제6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통관부서장이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를 지정 한 세관의 원산지조사부서장에게 원산지조사를 의뢰한다.

⑥ 원산지조사부서장은 제5항에 따른 원산지조사를 마친 경우 법 제17조제6항 등에 따라 원산지조사 결과를 수입자에게 통지하는 때에 원산지조사를 의뢰한 통관부서 장에게도 함께 통지한다.

⑦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7의2제1항제3호의 물품은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심사한다.

**제17조의2(사전 협정관세 심사 물품 지정·해제)** ① 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전 협정관세 심사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여 지정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물품을 말한다.

1. 적용대상 협정 또는 원산지에 따른 협정관세율과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세 율간 차이가 큰 물품
2. 수입 상대국의 통상적인 생산량에 비해 우리나라로의 수입량이 과도하게 많은 물품
3.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4. 그 밖에 관세청장이 원산지 및 협정관세 적용 요건 위반 등에 따른 관세탈루의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관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 사전심사 물품을 지정하여 지정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적용대상 협정·원산지·품목번호·품명(단,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품목번호와 품명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2. 협정관세 사전심사 적용 기간

③ 관세청장은 지정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사전심사 물품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제4절 수입신고수리 후 협정관세의 신청 및 적용

**제18조(수리 후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① 수입자가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입 신고수리 후 협정관세를 적용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통관시 스템을 통해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세관장이 인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2. 원산지증명서(법 제9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된 정보가 전자적으로 교환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3.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8조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 내용을 기재한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
4.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정하는 원산지증빙서류(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② 제1항제2호의 서류는 세관장이 원본을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본을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이미지화 한 것 또는 별표 1의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스탬프를 날인한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다.
  - ③ 세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서류 제출과 관련한 사항은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9조(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서류 심사)** ① 수입자가 제18조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제11조 각 호의 사항
  2.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인지 여부. 다만, 수입자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품목분류 변경에 따른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인지 여부
  3. 경정청구내역의 세액계산이 정확한지 여부
  4. 원산지증명서가 협정 및 규칙 제15조에서 규정한 각 협정별 서식(작성방법을 포함한다)과 일치하는지 여부
  5.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에서 정한 소급발급 기간 이내에 발급되었는지 여부
- ② 세관장은 제1항을 심사한 결과 필요한 경우 원산지증빙서류의 추가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요구, 제출, 수입신고의 수리, 원산지조사 의뢰 및 협정관세의 적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 ③ 원산지증빙서류의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3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의 정정)** ① 수입자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정정하려

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협정관세 적용신청 정정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정정신청서를 심사하여 정정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정된 사항을 전자통관시스템에 입력한다.

## 제3장 원산지증명

### 제1절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제21조(원산지증명서 신청인)**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정에서 정하는 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http://cert.korcham.net>)를 통해 권한을 위임 받은 자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발급신청의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 자는 관세사,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법」 제19조제4항의 통관취급법인등으로 한다.

**제22조(증명서발급기관)** ①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체약상대국 관세당국(협정에서 정한 다른 권한 있는 당국이 있는 때에는 그 당국을 말한다)에 통보할 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에 따른 세관
2.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공회의소등”이라 한다)

② 증명서발급기관 중 세관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인장을, 대한상공회의소등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정한 인장을 원산지증명서 발급용 인장으로 사용한다.

**제23조(원산지증명서 발급내역 보고)** 규칙 제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전자적인 방식으로 매일 통보하여야 한다.

1. 원산지증명서 발급 내역
2.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반려 내역(규칙 제9조제6항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3. 허위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에 대한 범칙조사 또는 범칙조사의뢰 내역

4. 제32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류 심사생략으로 처리한 실적

**제24조(반려 및 조사의뢰 등)** ① 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1. 제29조의 현지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2.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규칙 제10조제8항에 따른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② 증명서발급기관은 신청인이 제26조에 따른 발급신청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60조에 따른 범칙조사의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 이외의 증명서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범칙조사의뢰를 요청한다.

**제25조(원산지증명서 작성 및 발급)** ①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신고(규칙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을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작성하거나 발급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거나 발급할 수 있다.
1. 수출물품을 분할 또는 동시 포장하여 적재하는 경우: 선하증권(B/L) 또는 항공운송장별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거나 발급
  2. 수출신고한 품목 중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거나 발급하는 경우: 수출신고서의 각 품목번호별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거나 발급
- ③ 계약상대국과 두 개 이상의 협정을 체결한 경우 원산지증명서는 각 협정마다 작성하거나 발급할 수 있다.

**제26조(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①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 제10조제1항의 절차에 따라 전자적인 방법으로 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증명서발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삭 제>

③ 증명서발급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규칙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규칙 제10조제2항의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이하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라 한다)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물품이 발급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의 물품과 동일하고 수출국이 동일한 경우
2.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 내용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물품의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것과 발급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경우
3.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인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번호(Reference No)를 제출하는 경우

④ 증명서발급기관의 장은 규칙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법 제12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하여 원산지를 확인한 물품을 원산지인증수출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자가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의 경우 또는 신청인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수출물품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소명서와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물품이거나, 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물품으로서 최종물품의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자가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인 경우: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에 따라 원산지확인서 또는 원산지포괄확인서로 인정되는 서류
2. 제5항에 따른 원산지간이확인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국내제조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

⑤ 규칙 제10조제1항제4호나목의 원산지간이확인물품은 별표 2의2와 같다.

⑥ 제1항의 전자적인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전자문서 방식"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1. 세관에 발급신청하는 경우: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이용신청 및 승인을 받아 인터넷통관포탈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2. 대한상공회의소등에 발급신청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수출물품 원산지 증명서 발급규정」에 따라 발급기관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전자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를 활용하는 방법

⑦ 규칙 제10조의2제2항제3호에서 따라 '관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세구역 반입신고서
2. 자유무역지역 외국물품 반입신고서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서류

⑧ 규칙 제10조의2제2항제4호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수입한 물품과 수출하는 물품의 동일성 확인을 위한 서류 : 해당 수입물품의 국제 운송서류 사본 등 입증서류
2.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 대상물품의 수입자와 수출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양수도계약서 등 입증서류
3.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협정 제2장 제2.6조(관세 차별)에 따른 대상품목인 경우에는 원산지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최초 수출국에서 작성된 해당 물품의 자재명세서, 제조공정도, 원재료구입명세서 등 입증서류

**제27조(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 ①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말한다.

1.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세번변경 관련 입증서류(예: 원료구입명세서, 자재명세서(BOM), 생산공정명세서, 사용자매뉴얼, 홍보책자 등)
2.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비원산지재료, 원산지재료 및 수출물품의 가격관련 입증서류(예: 자재명세서(BOM), 원료구입명세서, 원료수불부, 원가산출내역서 등)
3. 규칙 제12조에 따른 원산지(포괄)확인서
4. 규칙 제13조에 따른 국내제조(포괄)확인서
5. 그 밖에 해당 물품의 생산자·생산장소·생산공정 등 원산지의 확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서류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재명세서(BOM)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자재명세서를 말한다.

**제28조(원산지증명서 선적 후 발급)** ① 증명서발급기관은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선적 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선적 후 발급 스탬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날인하여 발급한다.

1.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싱가포르와의 협정): 15번 란(Certification)에 날인
2.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12번란(Certification)에 날인
3. 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인도와의 협정): 제6란(Remarks)에 날인
4. 규칙 별지 제22호서식(베트남과의 협정): 12번란(Certification)에 날인
5. 규칙 별지 제24호서식(중국과의 협정): 제5란(Remarks)에 날인
6. 규칙 별지 제24호의3서식(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4란(Remarks)에 날인
7. 규칙 별지 제24호의7서식(이스라엘과의 협정): 제7란(Observations)에 날인

8. 규칙 별지 제24호의9서식(캄보디아와의 협정): 13번란(Certification)에 날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선적 후 발급 스탬프를 날인하지 않는다.

1.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선적일을 포함한다)에 발급하는 경우

2. 인도와의 협정: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선적일을 포함한다)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3. 베트남과의 협정: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선적일을 포함한다)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4. 중국과의 협정: 선적일 후 7근무일(선적일을 포함하지 않는다)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5.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선적일로부터 7일(선적일을 포함한다)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6. 이스라엘과의 협정: 선적일 후 7근무일 이내(선적일을 포함하지 않는다)에 발급하는 경우

7. 캄보디아와의 협정: 선적일로부터 7일(선적일을 포함한다)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③ 증명서발급기관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선적 후 발급 스탬프의 문구를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재하여 발급한다.

**제29조(현지확인)** ① 세관장은 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현지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현지확인을 시작하기 전날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2호서식의 현지확인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10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지확인을 시작하는 날에 현지확인 통지를 할 수 있다.

1. 현지확인 이유 및 법적 근거

2. 현지확인 기간 및 방문자

3. 확인대상 내용

4. 확인 거부시 처리내용

② 제1항에 따른 현지확인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현지확인의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희망하는 연기기간과 연기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현지확인 연기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현지확인 연기 신청서를 받은 세관장은 규칙 제10조제6항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한 준수 가능성 및 연기 사유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연기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결정한 현지확인 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현지확인 장소가 관할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그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현지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확인을 수행한 세관장은 그 결과를 의뢰한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현지확인에 관하여는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를 따른다.

**제30조(현지확인대상 선정 및 해제)** ① 규칙 제10조제4항제3호의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현지확인’의 대상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년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오류 등의 비율이 5%를 초과하는 자. 이 경우 ‘오류 등의 비율’은 제24조제1항에 해당 하는 건수를 전체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건수로 나눈 것의 백분율로 한다.
2. 전년도에 다음 각 목의 법령 위반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자  
가. 법 제44조, 제45조  
나. 「관세법」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6조
3. 그 밖에 증명서발급기관의 장이 생산공장의 유무, 제조과정(예: 단순 가공 공정) 및 물품의 특성(예: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으로서 원재료의 가격 변동이 심한 물품) 등을 고려하여 규칙 제4조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현지확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매년 2월 1일까지 지정하여 증명서발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긴급히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현지확인 대상자로 지정하고 즉시 증명서발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현지확인 지정대상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하여 원산지를 확인한 물품을 원산지인증수출자로부터 공급받아 추가 가공 없이 수출하는 경우
2. 세관장이 현지확인을 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제31조(대한상공회의소등의 현지확인 요청 절차)** ① 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현지확인을 요청하려는 대한상공회의소등의 장은 구체적인 사유와 확인요청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현지확인 요청서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현지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현지확인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요청받은 사실을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규칙 제10조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내에 현지확인을 완료하고 원산지인정요건 충족여부 및 그 증빙서류를 대한상공회의소등의 장 및 관세청장에게 송부(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신청서류 심사)** ① 규칙 제10조제6항에 따라 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원산지증명서 신청인이 신청자격이 있는지 여부
2.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일이 선적일부터 1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3. 규칙 제4조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4.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작성방법과 일치하는지 여부
5. 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첨부서류 제출 여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 1년마다 1년의 기간 동안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2.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물품의 적용대상 협정과 품목번호 6단위가 인증을 받은 품목과 동일한 경우로 한정한다)
3. 법규준수도 우수업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A등급 이상
4. 최근 1년 이내 수출물품의 원산지조사 결과 ‘이상 없음’으로 확인된 업체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심사생략 대상자를 선정하여 증명서발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에 대한 통보는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제33조(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보관)** ① 증명서발급기관은 제32조에 따른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한다. 이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은 1회를 원칙으로 한다.

② 증명서발급기관은 규칙 제10조제6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발급한다.

1. 인도와의 협정: 원본 1부와 부분 2부
2. 그 밖의 협정: 원본 1부와 부분 1부

③ 증명서발급기관은 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부분 1부를 협정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34조(원산지증명서 재발급)** ① 규칙 제10조제9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재발급·정정발급)신청서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도와의 협정에 한하여 협정 제4.4.조제2항의 원산지증명서 제4부분을 함께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받은 증명서발급기관은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재발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일자는 원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가 기재된다.

③ 증명서발급기관은 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서면으로 재발급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재발급 스탬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날인하여 발급한다.

1.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싱가포르와의 협정): 15번 란(Certification)에 날인
2.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12번 란(Certification)에 날인
3. 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인도와의 협정): 제6란(Remarks)에 날인
4. 규칙 별지 제22호서식(베트남과의 협정): 12번 란(Certification)에 날인
5. 규칙 별지 제24호서식(중국과의 협정): 제5란(Remarks)에 날인하고 “of original Certificate of Origin number(발행번호) dated(날짜)”를 추가로 기재
6. 규칙 별지 제24호의3서식(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4란(Remarks)에 날인하고, 제12란에는 당초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를 추가로 기재
7. 규칙 별지 제24호의5서식(「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4란(Remarks)에 날인하고 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 일자를 추가로 기재
8. 규칙 별지 제24호의9서식(캄보디아와의 협정): 13번 란(Certification)에 날인

④ 증명서발급기관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진정등본(CERTIFIED TRUE COPY)” 문구를 제3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재한다.

**제35조(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① 제33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수출신고필증의 정정, 원산지증명서의 오탈자, 수량, 품목번호 등의 착오, 누락, 또는 기재오류 등을 이유로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규칙 제10조제1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로서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려는 자가 그 정정발급을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재발급·정정발급)신청서
2. 원산지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이 경우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정정발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3. 정정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정정발급 신청을 받은 증명서발급기관은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정정발급 할 수 있다.

③ 증명서발급기관은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의 원본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

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아세안회원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및 캄보디아와의 협정: 수정하려는 글자 중앙에 선을 긋고 정정하며, 정정한 곳에 서명권자의 서명과 발급기관 인장을 날인
  2. 그 밖의 협정: 수정하려는 글자 중앙에 선을 긋고 정정하며, 정정한 곳에 발급기관 인장을 날인
- ④ 규칙 제10조제11항에 따라 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이미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여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일자 는 본래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로 한다.
1.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2. 베트남과의 협정
  3.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4.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5.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36조(원산지증명서 신청취하)** ①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재발급 및 정정발급을 포함한다)을 신청한 자가 그 신청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증명서발급기관에 별지 제5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취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발급 취하 신청을 받은 증명서발급기관은 취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37조(원산지증명서 등의 전자문서 방식 처리)** ① 관세청장은 규칙 제10조제11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등의 전자문서를 지정 정보통신망에 공고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 등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26조제6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6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신청인이 전산시스템 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규칙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원산지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증명서발급기관의 장은 그 내역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한다.

**제38조(증명서 발급담당자의 교육이수)** ①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세관 및 대한상공회의소등의 증명서 발급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1. FTA 법령에 관한 사항

2.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
3. 물품가격의 산정에 관한 사항
4.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사항
5.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교육시간은 매년 40시간 이상으로 하되 관세청장이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는 교육시간을 줄일 수 있다.

**제39조(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대장)** ① 규칙 제12조에 따라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원산지확인서 작성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1. 작성번호 및 작성일
2. 품명·품목번호·수량 및 단위
3. 원산지·원산지결정기준
4. 공급받는 자의 상호 및 사업자번호
5. 원산지 포괄확인기간
6. 자유무역협정

②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른 관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한 원산지확인서를 제공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별도로 기재·관리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 ① 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한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1. 원산지(포괄)확인서
2. 원산지(포괄)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정보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1.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2. 원산지(포괄)확인서의 기재내용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5일 이상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 신청 보완요구서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세관장은 원산지(포괄)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신청인의 주소·거소·공장 또는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원산지(포괄)확인서에 대한 세관장 확인 신청 및 그 확인은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 및 확인에 관한 세부절차는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절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제41조(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 지정 및 해제)** 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자는 서명권자를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 ②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자가 서명권자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때에는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에 새로운 서명권자의 서명·부서명·직책·성명·지정일자 및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종전의 서명권자에 대하여는 서명 권한 해제일자 및 사유를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제42조(원산지 자율증명 절차)** ①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자는 원산지증명서를 작성·서명한 후 규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② 생산자(재료의 생산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제공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1. 규칙 제12조제1항의 원산지(포괄)확인서
2. 규칙 제13조의 국내제조(포괄)확인서
3. 규칙 제10조제1항제4호의 원산지소명서

**제43조(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등 작성)** 칠레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 수출자는 생산자가 작성·제출한 별지 제10호서식의 한-칠레 FTA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다. 다만, 휴·폐업 등의 사유로 생산자에게 원산지신고서를 제출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의 원산지확인서 또는 규칙 제13조의 국내제조확인서나 생산자·생산장소·생산공정 및 거래계약서 등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또는 사실에 근거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3절 원산지증빙서류 수정통보

- 제44조(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통보)** ① 세관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빙 서류의 수정통보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과 수출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원산지조사 담당 세관장(또는 담당부서)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통보서를 보고 받은 때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수정통보서의 접수와 통보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서 담당한다.

#### 제4절 원산지관리사

**제45조(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① 규칙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인된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38조에 따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법인등기부 등본
  2. 별표 5에 따른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자격시험 시행계획서
-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을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장 원산지조사

**제46조(협정관세 적용보류자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절차)**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보류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방식으로 적용한다.

1. 적용보류된 물품과 동종·동질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49조에 따른 세율(자유무역협정세율 제외)을 적용
2. 적용보류된 물품과 동종·동질이 아닌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제10조 및 제18조에 따

## 제5장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제47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의 신청)** ① 영 제37조제2항에 의한 사전심사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부서(이하 “사전심사부서”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관세청 원산지검증과
2. 영 제37조제1항제4호 중 관세환급 및 납기연장에 관한 사항: 관세청 세원심사과
3. 영 제37조제1항제4호 중 관세감면의 적용 여부: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4. 영 제37조제1항제5호: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5. 그 밖의 사항: 관세청장이 정하는 부서

②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서류는 서면, 우편, 전자메일(E-Mail) 또는 전자신고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사전심사를 신청할 경우에는 규칙 제31조제3항에서 규정한 사전심사 신청수수료를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고 신청하여야 한다.

**제48조(사전심사 신청서류의 적정여부 확인)** ① 사전심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전심사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신청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된 사전심사 신청대상인지 여부
2. 각 협정에서 정하는 사전심사 신청대상인지 여부
3. 신청주체, 신청서 서식 및 기재항목 적정 여부
4. 제50조에 따른 반려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5. 신청내용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갖추었는지 여부

② 사전심사부서의 장은 사전심사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 서류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전심사 신청대장에 신청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9조(신청서류의 보정)** ① 사전심사부서의 장은 영 제37조제3항에 따라 사전심사신청서와 신청 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결과 원산지 등의 신청사항을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일 이상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14호서식의 사전심사 보정요구서로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요구 사유
3. 보정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신청인이 보정에 필요한 기간과 사유를 명시한 문서로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사전심사부서의 장은 이를 고려하여 보정기간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제50조(신청서류의 반려)** 사전심사부서의 장은 영 제3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전심사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수입신고 후에 사전심사가 신청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2.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협정에 대해 신청한 경우
3. 신청 자격이 없는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
4. 제49조에 따른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해당 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법 제17조부터 법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에 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6. 사전심사 신청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7. 신청인이 반려를 요청하는 경우

**제51조 <삭 제>**

**제52조(사전심사 결과통지)**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사전심사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② 사전심사부서의 장은 사전심사서를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전심사의 주요 내용을 지정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수입자가 사전심사서의 내용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영 제37조제6항 각 호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53조(사전심사서의 효력)** 세관장은 사전심사서와 물품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사전심사서의 반복사용 여부를 불문하고 사전심사서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물품의 내용’이라 함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하여 사전심사서와 수입물품이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

**제54조(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영 제38조에 따른 이의제기서와 첨부서류는 서면, 우편 또는 전자메일(E-Mail)로 제출할 수 있다.

**제55조(사전심사 내용의 변경)** ① 규칙 제32조에 따른 사전심사변경 내용 수정통보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② 사전심사부서의 장은 수정 통보내용을 검토한 결과 해당 사전심사서에 의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인정되지 않거나 해당 사전심사서가 영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원산지를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③ 사전심사부서의 장은 영 제39조제3항에 따라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그 내용을 법 제31조제1항의 신청인, 수입자 및 통관지세관장에게 통지(통보)하여야 한다.

1. 사전심사서 변경 또는 철회 이유 및 법적 근거
2. 사전심사서 변경 또는 철회내용 적용일
3. 영 제40조에 따른 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적용유예를 받기 위한 신청의 절차

**제56조(사전심사서 변경 적용유예)** ① 규칙 제33조에 따른 사전심사서 변경적용 유예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유예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사전심사서 변경적용 유예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서류에 대한 보정과 반려에 대하여는 제49조와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장 협정관세의 적용제한

**제57조 <삭 제>**

**제58조(적용제한자 지정 해제)** ①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적용제한자가 그 지정의 해제를 받으려면 규칙 제38조에서 규정한 별지 제39호서식의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적용제한자를 지정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류는 서면, 우편 또는 전자메일(E-Mail)로 제출할 수 있다.

1. 원산지소명서(품목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원산지소명서 입증자료
3. 원산지증빙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세관장이 요

구하는 자료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가 확인되는 경우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장 보칙

**제59조(비밀취급자료 지정)** 영 제50조제2항에 따른 비밀취급자료 지정요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제60조(범칙조사의뢰)** ① 세관장은 이 고시를 적용하는 경우 법 제44조 및 제45조나 「관세법」을 위반한 범칙사실을 발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범칙조사를 의뢰한다.

1. 범칙행위자의 확인서
2. 관련 범칙행위에 관한 증거자료
3. 그 밖에 범칙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

②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범칙조사대상자가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나 생산자인 경우에는 동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관세청장은 이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1조(통지방법)**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통지는 등기우편이나 수령이 확인되는 전자메일(E-Mail) 또는 팩스로 하여야 한다.

**제62조(준용규정)**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및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63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관세청고시 제2016-63호(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의 경과조치) [별지 제1호서식]의 ‘협정관세 적용신청 정정 승인(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취하승인(신청)서’는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산시스템의 서식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관세청고시 제2017-79호(2017. 12. 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관세청고시 제2019- 29호(2019. 7.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관세청고시 제2019- 68호(2019. 12.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관세청고시 제2020- 08호(2020. 3. 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관세청고시 제2021-84호(2021. 12. 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5호, 제34조제3항제6호, 제35조제3항제1호 중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해당하는 부분, 제35제4항제3호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해당하는 부분은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하고, 제28조제1항제7호, 제2항제6호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스라엘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관세청고시 제2022-17호(2022. 5. 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관세청고시 제2022-58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제8호 및 제2항제7호, 제34조제3항제8호, 제35조제3항제1호 중 캄보디아와의 협정에 해당하는 부분, 제35조제4항제5호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캄보디아와의 협정에 해당하는 부분은 캄보디아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하고, 제10조제2항 단서, 제17조제7항, 제1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2항제1호 중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해당하는 부분과 제28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제6호는 이스라엘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관세청고시 제2023-37호(2023.4.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5월 1일 이후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관세청고시 제2024-00호(2024.4.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4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증명서 재발급 및 정정발급 시 서류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및 정정발급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스탬프

본 사본이 원본과 다를 경우 관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세관에서 요구시 원본을 제출하겠습니다.

수입자 000 서명

[별표 2] 동종·동질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면제물품

적용협정	HSK	품명·규격	원산지	원산지 결정기준
아세안 회원국 과의 협정	2505100000	SILICA SAND (규사)	VN, MY	완전 생산 기준
	2521001000	LIMESTONE (석회석)	VN, MY	
	2905173000	STEARYL ALCOHOL (알코올)	ID, PH	
	2922413000	L-LYSINE MONOHYDROCHLORIDE (아미노화합물)	ID	
	3823120000	OLEIC ACID (공업용 지방산)	MY, ID	
	4408319011	MALAYSIAN DIRIED VENEER (베니어용 단판)	MY	
	7403110000	COPPER CATHODE (정제구리)	PH	
	8001100000	TIN INGOT (주석)	MY, ID	
싱가포르 와의 협정	2912193000	BUTYRALDEHYDE (유기화합물)	SG	
	2915600000	PENTANEDIOL MONOISOBUTYRATE (유기화합물)	SG	
	3206110000	TITANIUM DIOXIDE (안료)	SG	
	3707902920	DEVELOPERS (사진용 화학 제품)	SG	
	3811210000	LUBRICATING OIL ADDITIVE (윤활유 첨가제)	SG	

[별표 2의2] 원산지간이확인물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제4호나목에 따른 원산지간이확인물품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유의사항>
1. 동 별표의 품목번호, 품명 등은 원산지간이확인물품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기타 목적(예: 품목분류 확인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물품 또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물품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간이확인물품에서 제외합니다.
    - 가. 국내에서 반가공품(블랭크)을 이용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국내에서 수행된 공정이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불인정 공정에 해당하는 경우
    - 나. 동 별표에서 정한 국내 필수 공정이 수행되지 않았거나, 비고란의 적용 제외 공정에 해당하는 경우
    - 다. 간이확인을 적용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목번호(HSK)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1	1902.19-1000	국수	밀이나 옥수수, 쌀, 감자 등의 가루를 반죽하여 만든 발효하지 않은 국수  -다만, 스프 등이 함께 소매포장된 경우 면에 본질적 특성이 있어야 하며(통칙3나), 전 중량의 20%를 초과하는 소시지·육(肉)·설육(屑肉)·피(blood)·어류·갑각류·연체동물·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이들의 배합물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밀가루, 쌀가루, 전분, 기타 곡물 가루를 원재료로 반죽, 성형 공정을 거쳐 생산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을 함유한 조제 품은 제외한다.			
2	1902.19-2000	당면	감자나 고구마전분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면  -다만, 스프 등이 함께 소매포장된 경우 면에 본질적 특성이 있어야 하며(통칙3나), 전 중량의 20%를 초과하는 소시지·육(肉)·설육(脣肉)·피(blood)·어류·갑각류·연체동물·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이들의 배합물을 함유한 조제 품은 제외한다.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전분, 기타 곡물 가루를 원재료로 반죽, 성형 공정, 증숙 공정을 거쳐 생산	
3	1902.19-3000	냉면	전분(감자·고구마)가루에 메밀가루나 칩가루 등을 혼합하여 반죽한 면  -다만, 스프 등이 함께 소매포장된 경우 면에 본질적 특성이 있어야 하며(통칙3나), 전 중량의 20%를 초과하는 소시지·육(肉)·설육(脣肉)·피(blood)·어류·갑각류·연체동물·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이들의 배합물을 함유한 조제 품은 제외한다.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밀가루, 쌀가루, 메밀가루, 전분, 기타 곡물 가루를 원재료로 반죽, 성형 공정을 거쳐 생산	
4	1902.30-1010	라면	국수를 증기로 익히고 기름에 튀긴 즉석식품  <제외대상> -다만, 스프 등이 함께 소매포장된 경우 면에 본질적 특성이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인도네시아 CEPA	밀가루(제1101호)와 전분 등으로 면을 만들고 유당(제1511호 등) 처리한 후 제조된 분말스프(제2103호)와 함께 소매포장	면발(제1902호)을 공급받아 생산시 적용 제외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있어야 하며(통척3나), 전 중량의 20%를 초과하는 소시지·육(肉)·설육(脞肉)·피(blood)·어류·갑각류·연체동물·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이들의 배합물을 함유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5	1905.90-1040	비스킷, 쿠키와 크래커	밀가루에 설탕이나 버터, 마가린, 계란, 첨가제 등을 넣어 구운 과자  <제외대상> -제1905.31호 스위트비스킷* 과 구분 * 가루, 설탕, 지방, 감미료 등 함량이 전 중량의 50% 이상인 것(전중량 설탕 10% 이상, 전중량 지방35% 이하, 완제품의 수분12% 이상)  -단 굽지 않은 반죽 상태의 생지는 제1901호에 분류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밀가루나 곡물가루를 반죽, 성형, 굽기 공정을 통해 생산	제1901호의 베이커리 제품 제조용 가루 반죽을 공급받아 생산 시 적용 제외,  베이커리 제품을 공급받아 분쇄하는 공정만 거치는 경우 원산지 적용 제외
6	1905.90-1090	기타의 베이커리 제품(빵, 건빵, 파이와 케이크, 비스킷, 쿠키와 크래커, 쌀과자 제외)	곡물가루에 설탕이나 버터, 마가린, 계란, 첨가제 등을 넣어 구운 기타의 베이커리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밀가루나 곡물가루를 반죽, 성형, 굽기 또는 튀김(유탕) 공정을 통해 생산	제1901호의 베이커리 제품 제조용 가루 반죽을 공급받아 생산 시 적용 제외,  베이커리 제품을 공급받아 분쇄하는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공정만 거치는 경우 적용 제외
7	2005.99-1000	김치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인도네시아 CEPA	배추, 무 등 각종 야채 등을 주·부재료로 절임, 각종 양념과 버무림 과정을 거쳐 생산	
8	2008.99-5010	김	김에 기름 등을 발라 구운 김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제12류 해초류(김)에 기름·소금 등을 첨가하여 굽는 공정을 거쳐 생산 - 굽기(Roast) 등 가공 공정 필수	‘20년 HSK 변경(개정)(제2106호 → 제2008호)
9	2101.11-1000	인스턴트 커피	커피 농축액을 건조·분말화한 즉석커피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제9류 커피원두를 볶아서 커피농축액을 추출한 후 동결 건조분쇄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커피농축액 추출 공정은 필수	인스턴트 커피(제2101호)에 볶은 원두커피분말(제0901호)을 단순 혼합하는 경우 적용 제외
10	2104.10-3000	채소로 만든 스프	가열 후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프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주요 원재료를 혼합한 후 조제 가공하고, 가열 성형 이후 동결 건조 작업을 통해 생산	
11	2208.90-4000	소주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12	2503.00-0000	황 [승화황(昇華黃)·침강황(沈降黃)·콜]	탈황공정을 통해 얻은 정제하지 않은 황이나 증류하여 정제된	한-아세안 FTA, 한-중 FTA, RCEP,	천연가스나 원유에서 탈황 공정을 통해 황을 생산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로이드 황은 제외	고체 또는 분말 상태의 황  <제외대상> -승화황, 침강황, 콜로이드 황 (제 2802호) -살충제 등 소매 포장 형태로 제조된 것(제3808호)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13	2523.30-0000	알루미나 (aluminous) 시멘트	산화알루미늄과 석회석을 혼합, 소성, 클링커 냉각 및 분쇄하여 만든 알루미나 (aluminous) 시멘트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주요 원료를 혼합하고 분쇄하여 클링커로 만든 후, 소성작업을 통해 생산	
14	2710.12-1000	자동차 휘발유	<제외대상> -석유나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미만인 것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원유(제2709호)의 증류과정에서 추출	
15	2710.19-2020	제트 연료유	<제외대상> -석유나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미만인 것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원유(제2709호)의 증류과정에서 추출	등유와 휘발유를 혼합하여 생산시 적용 제외
16	2710.19-3000	경유	<제외대상> -석유나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미만인 것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원유(제2709호)의 증류과정에서 추출	원유가 아닌 석유조제품 (제 2710호)을 재료로 사용시 적용 제외
17	2710.19-5020	윤활유 기유 (基油)	기계의 마모를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윤활유의 원료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원유(제2709호)의 증류 과정에서 추출되며, 정제공정, 수소첨가 분	제 2710.19호에 해당 하는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제외대상> -석유나 역청유 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미만인 것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해 또는 탈왁스 (Dewaxing) 공정 등을 거쳐 생산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 시 적용 제외 예시) 제 2710.19 -5010호 의 조유 를 원재 료로 제 2710.19 -5010호 의 운할 기유를 생산
18	2713.2 0-0000	석유역청(瀝 靑)	원유를 정제하고 남은 액체나 반 고체 상태의 석 유 화합물	한-아세안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원유를 정제·감 압증류 공정을 거쳐 생산 원유 의 증류 (distillation) 공 정은 필수	천연 아 스팔트 는 제 2714호
19	2803.0 0-9011	카본블랙의 이차전지 제 조용	흑색 미세 분말 상의 카본블랙으 로서 2차전지 전 극제조용인 것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주요 원재료를 반응로 및 포집 공정 및 불순물 제거 과정을 통 해 건조하여 제 조	
20	2815.2 0-0000	수산화칼륨 [가성(苛性) 칼륨]	KOH가성(苛性)칼륨 (CAS number 1310-58-3)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염화칼륨과 물을 용해조에 넣은 후 반응조를 통 해 전기분해하고 가성칼륨이 되면, 농축기에 담아 증발시켜 완제품 을 생산	
21	2817.0 0-1000	산화아연	물에 녹지 않는 무 색의 결정으로 ZnO(CAS number 1314-13-2)로 표기 함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주요 원료를 산 화·분급 과정을 거쳐 생산	
22	2902.2 0-0000	벤젠	방향족 탄화수소 화합물-분자식 : C6H6 -CAS NO.71-43-2 <제외대상>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원유(제2709호)의 증류과정에서 추 출한 나프타를 분해하는 과정에 서 추출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순도 95% 미만 인 것(제2707호)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23	2902.30-0000	톨루엔	방향족 탄화수소 화합물 -분자식 : C <sub>6</sub> H <sub>5</sub> CH <sub>3</sub> -CAS NO.108-88-3  <제외대상> -순도 95% 미만 인 것(제2707호)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중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콜타르를 고온 증류해서 추출한 나프타(제2707호)나 원유(제2709호)의 증류과정에서 추출한 나프타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추출	
24	2902.43-0000	파라-크실렌	방향족 탄화수소 화합물 -분자식: C <sub>8</sub> H <sub>10</sub> -CAS NO.71-43-2  <제외대상> -순도 95% 미만 인 것(제2707호)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원유(제2709호)의 증류과정에서 추출한 나프타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추출	
25	2909.43-0000	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 에테르와 디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 에테르	페인트나 잉크의 용제, 세정제 등의 원료로 사용  -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 에테르 (CAS NO.112-07-2) -디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 에테르 (CAS NO.112-34-5)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중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원유 정제과정에서 생산되는 부탄올(제2905.13호)과 에틸렌옥사이드(제2910.10호)를 주요원재료로 합성, 숙성, 정제/증류 공정을 거쳐 생산	
26	2915.70-2040	스테아르산 아연	스테아르산, 팔미산과 아연의 화합물로 C <sub>36</sub> H <sub>70</sub> O <sub>4</sub> Zn(CAS number 557-05-1)로 표기함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주요 원재료를 화학적 반응을 시킨 후 건조 및 분쇄과정을 통해 제조	
27	2917.14-0000	무수말레산	무색 바늘 결정 모양으로 가소제, 폴리에스터수지, 알키드 수지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화합물 (CAS NO. 108-31-6)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중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1.벤젠(제2902호)을 산화바나듐의 촉매하에 400~500°C에서 공기 산화시켜 생산 2.부탄(제2711호) 또는 PA(Phthalic Anhydride) 제조 시 발생한 부산물을 정제하여 생산	말레산(제2917호)을 가열하거나 탈수하여 생산한 경우 적용 제외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28	2917.35-0000	무수프탈산	무색바늘결정 모양으로 프탈산가소제나 도료, 폴리에스테르수지 등의 원료로 사용 ( C A S NO.85-44-9)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크실렌(제 2902호)을 산화바나듐, 촉매 등을 이용하여 산화하여 생산	단순히 프탈산(제 2917호)을 가열하거나 탈수하여 생산한 경우 적용 제외
29	2917.36-1000	테레프탈산	폴리에스터섬유, PET수지, 필름도료 및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등의 주원료로 사용 ( C A S NO.100-21-0)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원유로부터 정제된 파라크실렌(제2902호)을 주원료로 산화, 정제, 분리, 건조공정을 거쳐 제조	
30	2917.37-0000	테레프탈산디메틸	테레프탈산에 있는 2개의 카복시기의 각 수소원자가 메틸기로 바뀐 에스터  • C A S NO.120-61-6 •화학식 : $C_{10}H_{10}O_4$ •용도 : 폴리에스테르계 섬유나 필름 등의 원료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파라자일렌(P-xylene)을 산화, 정제하여 테레프탈산을 만들고, 이를 메탄올 에스테르화 공정을 통해 제조	테레프탈산(제 2917.36호)과 메탄올을 원료로 하여 완제품(제 2917.37호)을 생산하는 경우 적용 제외
31	2917.39-1000	이소프탈산	프탈산과 테레프탈산의 이성질체인 무색결정의 방향족 화합물로 알키드수지·폴리에스테르수지·폴리아마이드수지 등의 원료로 사용 (CAS NO.121-91-5)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방향족 탄화수소인 m-자일렌(제 2902호)을 산화하여 생산	
32	2929.10-1000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폴리우레탄, 폴리에스테르섬유, PET수지, 필름도료 등의 주원료로 사용 (CAS NO.584-84-9)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중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톨루엔(제 2902호)을 니트로화 시켜 디니트로톨루엔(제2904호)을 제조하고 수소반응 시켜 생산	
33	3005.10-9000	기타 접착성 피복재와 접착층을 갖는	접착성이 있는 패치형 의료용품(소매포장 형태의	한-아세안 FTA, 한-중 FTA,	섬유나 플라스틱 재료에 약물 등을 도포한 후 일	약물이 도포되지 않은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그 밖의 물품	것)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정 형상으로 절단하고 이면에 접착제를 도포하여 생산 -의료용품 특성이 부여되는 공정 필수	경우 제품 표시 사항 등에 의료 용으로 식별되는 것
34	3207.30-4000	은으로 만든 액체 상태의 러 스테르 (lustre)	은 플레이크, 레진, 첨가제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것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주요 원료를 교반공정을 통해 생산 후, 여과공정을 거친 후 제조	
35	3212.10-0000	스탬프용 박 (箔)	피소재에 전사하는 방법으로 인쇄 효과를 구현하기 위한 것  <제외대상> -안료 등이 없는 금속박 등은 제외)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투명 플라스틱 (PET, OPP 등) 필름에 글루 등과 결합시킨 안료나 금속가루 등을 증착, 접합하여 생산	
36	3215.19-0000	인쇄용 잉크 (흑색의 것은 제외)	<제외대상> - 포토 레지스트 또는 카트리지에 담긴 토너(제 3707호)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유기착색제 등을 용제나 수지 등에 섞어 만든 전색체에 개어 미세하게 분산시켜 생산	잉크·필기용 잉크·제도용 잉크와 그 밖의 잉크를 공급받아 카트리지를 생산하는 경우 적용 제외
37	3303.00-1000	향수	액체 화장품으로 신체 및 의상에 뿌리는 것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주요 원재료를 혼합하여 냉각 후 향료 등을 조합하여 알코올에 분해한 후 냉장 등의 숙성 작업을 통해 제조	
38	3305.10-0000	샴푸	두피, 모발세정제  <제외대상> -두피, 모발용 외에 체모나 애완용은 제외(제 3307호)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인도네시아 CEPA	계면활성제(알킬황산염 등)에 기포증진제(아민옥사이드 등), 유화제, 점증제 등을 혼합하여 제조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39	3307.10-1000	에프터 웨이빙 로션	남성용 에프터 웨이빙 로션으로 플라스틱 용기 등에 소매포장된 것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주요 원재료를 교반작업 후 내용물에 대한 품질검사 후 생산함	
40	3401.30-0000	바디클렌저 (body cleanser)	피부세정제 <제외대상> -소매용이 아닌 것(제3402호) 또는 동물용(제3307호) 제외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유기 계면활성제를 주 원재료로 화학재료 또는 천연재료를 사용하여 혼합 또는 교반 과정을 거쳐 생산	
41	3406.00-0000	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	왁스, 향료 등을 첨가하여 만든 양초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주요 원재료에 파라핀 왁스 등을 용해하여 심지를 넣고 성형한 후 굳혀서 생산	
42	3506.10-2000	플라스틱을 기본 재료로 한 접착제	플라스틱 원료를 기본재료로 한 소매용 접착제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주요 원재료인 용제와 합성수지, 첨가제 등을 넣고 혼합(교반)하여 굳히는 과정을 통해 제조	
43	3506.91-1000	제3901호~제3913호의 폴리머 (polymer)나 고무를 기본 재료로 한 접착제 [광학용 투명 점착필름접착제·광학용 투명 경화성 액상접착제(평판디스플레이 또는 터치감지 스크린패널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	아크릴수지나 폴리머 계열의 수지 등을 기본으로 한 조제 접착제  <제외대상>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 (순중량 1kg 이하)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제3901호~제3913호의 폴리머 (polymer)나 고무 등에 첨가제 등을 혼합하여 생산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로 사용 되는 종류의 것)]				
44	3506.91-9000	제3901호~제3913호의 폴리머 (polymer)나 고무를 기본 재료로한 접착제 [광학용 투명 점착필름 접착제·광학용 투명경화성 액상 접착제 (평판디스플레이 또는 터치감지 스크린패널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	아크릴수지나 폴리머 계열의 수지 등을 기본으로 한 조제 접착제  <제외대상>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 (순중량 1kg 이하)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제3901호~제3913호의 폴리머 (polymer)나 고무 등에 첨가제 등을 혼합하여 생산	
45	3707.90-1090	포토레지스트 (반도체 또는 오일이디 제조용은 제외)	빛에 의해 약품 내성이 변화하는 감광성 화합물  <제외대상> -희토류 등 귀금속의 염과 그 밖의 물품(제2943호~제2846호, 제2852호)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플라스틱 일차제품 (제3901호~제3914호)과 첨가제 (제29류 또는 제38류)를 사용하여 용해과정을 거쳐 생산	
46	3808.94-0000	소독제	소독제로 소매포장된 것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주요 원재료를 교반기에 투입 후 혼합하여 생산함	
47	3809.91-0000	섬유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	섬유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되는 완성가공제, 염색 촉진용 · 염료 고착용 염색캐리어, 드레싱 및 그 밖의 물품과 조제품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주요 원재료를 혼합·유화·중합 후 생산	
48	3809.92-0000	제지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	제지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되는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주요 원재료를 중축하고 냉각하여 PH를 조절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용하는 것	것임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49	3809.9 3-0000	가죽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	가죽산업에서 사용하는 완성이공제 또는 그 밖의 조제품인 것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주요 원재료를 투입하여 혼합공정을 거쳐 제조	
50	3817.0 0-0000	혼합 알킬벤젠과 혼합 알킬나프탈렌 (제2707호·제2902호의 물품은 제외)	알킬기가 치환된 알킬벤젠 또는 알킬나프탈렌의 혼합물  <제외대상> -이성질체 혼합물의 것(제2902호)	한-아세안 FTA, 한-중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원유를 통해 생산된 등유나 방향족 탄화수소 등에서 다음과 같은 공정으로 생산 1. 염화파라핀에 의한 방향족 탄화수소의 알킬화 2. 모노알킬벤젠의 불균화 반응 3. 선형 알킬벤젠의 알킬화 4. 올레핀에 의한 방향족 탄화수소의 알킬화	
51	3901.1 0-9000	기타 폴리에틸렌 (비중 0.94 미만으로 한정)	밀도가 낮은 사슬 모양의 폴리에틸렌을 펠릿(pallet) 형태로 가공한 것	한-아세안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원유에서 나프타를 분리·분해하여 에틸렌(제2711호)을 분취하고 이를 중합시켜 일차제품형상으로 생산-중합(polymerization) 및 성형공정 필수	스크랩(제3915호)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차제품으로 변형되었다 하더라도 둘 이상의 열가소성 재료가 혼합된 경우에는 적용 제외
52	3901.2 0-0000	폴리에틸렌 (비중이 0.94 이상으로 한정한다)	1차 형상의 고밀도 폴리에틸렌 (94% 이상) 중합체의 것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주요 원재료를 선별·혼합·세척·탈수·용융 및 압출·절단 공정을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거친 후 생산	
53	3901.30-0000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의 스크랩(scrap)을 절단·용융·압출·커팅·냉각하여 펠릿형태로 가공한 것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주요 원재료를 투입하여 절단·용융·압출·커팅 및 냉각과정을 거쳐 생산	
54	3902.10-0000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과 같이 석유에서 얻어진 프로필렌을 촉매반응을 통해 중합시킨 것으로 (C3-H6)X-(9003-07-0)로 기재함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주요 원재료를 투입하여 정제(조촉매 공급)·반응·제립(용융, 절단, 고형화)·포장을 통해 제조	
55	3903.20-0000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 공중합체(SAN)	스티렌(S)에 아크릴로니트릴(A)을 중합시킨 수지  <제외대상> -일차제품(블록, 럽프, 플레이크, 가루 등) 형상이 아닌 것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스티렌(제2902.50호)과 아크릴로니트릴(제2926.10호)을 중합, 압출공정을 통해 생산	
56	3903.30-0000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공중합체(ABS)(일차제품의 것)	아크릴로니트릴(A), 부타디엔(B), 스티렌(S) 중합시킨 수지  <제외대상> -일차제품(블록, 럽프, 플레이크, 가루 등) 형상이 아닌 것 -단일 단량체 함량이 전체중량의 95% 이상인 것 -스티렌-부타디엔 고무(제4002호)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아크릴로니트릴(제2926.10호), 부타디엔(제2901.24호), 스티렌(제2902.50호)을 주요 원재료로 중합공정을 거쳐 생산	
57	3903.90-1000	스티렌-부타디엔공중합체(일차제품의 것)	기타의 스티렌부타디엔중합체  <제외대상> -일차제품(블록, 럽프, 플레이크,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스티렌(제2902.50호)과 부타디엔(제2901.24호)을 배합, 압출공정을 거쳐 생산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가루 등) 형상이 아닌 것  -단일 단량체 함량이 전체중량의 95% 이상인 것	한-캄보디아 FTA		
58	3904.22-0000	폴리(염화비닐)(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것 제외)	가소화 한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일차(블록, 플레이크, 가루 등)제품  <제외대상> -스크랩이나 웨이스트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나프타에서 얻어지는 VCM(Vinyl Chloride Monomer)을 중합하여 제조하거나 플라스틱 스크랩을 재생하여 생산	
59	3906.10-0000	폴리(메틸메타크리레이트)(일차제품의 것)	메타아크릴산메틸중합체 수지로 광선 투과율이 높음  <제외대상> -일차제품 (블록, 럽프, 플레이크, 가루 등) 형상이 아닌 것 -아크릴로니트릴 공중합체(제40류)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주요 원재료는 제29류 및 제39류, 제38류에 해당하는 화학제품을 주요 원재료로 원료 배합, 중합 공정을 거쳐 생산	
60	3907.61-0000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점도 번호가 그램당 78밀리리터 이상인 것)	테레프탈산과 에틸렌글리콜을 중합하여 얻을 수 있는 수지로 흔히 PET라고 함  <제외대상> -일차제품 (블록, 럽프, 플레이크, 가루 등) 형상이 아닌 것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150 ~ 230 °C 에서 테레프탈산(제2917.36호), 테레프탈산디메틸(제2917.37호), 에틸렌글리콜(제2905.31호) 등을 중합시켜 생산	
61	3907.69-0000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점도 번호가 그램당 78밀리리터 이상인 것 제외)	테레프탈산과 에틸렌글리콜을 중합하여 얻을 수 있는 수지로 흔히 PET라고 함  <제외대상> -일차제품 (블록, 럽프, 플레이크, 가루 등) 형상이 아닌 것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150 ~ 230 °C 에서 테레프탈산(제2917.36호), 테레프탈산디메틸(제2917.37호), 에틸렌글리콜(제2905.31호) 등을 중합시켜 생산	
62	3909.40-0000	페놀수지(일차제품의 것)	페놀류와 포름알데히드로 제조되	한-아세안 FTA, 한-중 FTA,	제2907호의 페놀과 포름알데히드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것)	는 열경화성 수지  <제외대상> -일차제품 (블록, 럽프, 플레이크, 가루 등) 형상이 아닌 것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제2912.11호)를 주요 원재료로 주반응 공정을 거쳐 생산	
63	3909.50-0000	폴리우레탄 (일차제품의 것)	고분자화합물로 탄성섬유 (스판덱스) 원료, 바니시나 도료, 접착제 등의 원료로 사용  <제외대상> -이온교환수지(제3914호)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제29류의 화학제품을 주요 원재료로 생산	제3909.10호, 제3909.20호, 제3909.31호, 제3909.39호, 제3909.40호 등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 적용 제외
64	3917.40-0000	플라스틱 연결구	조인트(joints) · 엘보(elbows) · 플랜지(flanges)와 같은 플라스틱 재질의 연결구류	한-아세안 FTA, 한-중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플라스틱 일차제품 (제3901호~제3914호) 및 플라스틱 웨이스트(제3915호)를 기본 원재료로 사출 또는 압출성형 공정을 거쳐 생산	플라스틱 연결구 반제품을 가공하여 생산한 경우 적용 제외
65	3918.90-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매트나 바닥 깔개(기타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롤이나 타일모양으로 된 플라스틱 바닥 깔개(접착성유무 불문)  <제외대상> -단순절단한 직사각형 깔개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주요 원재료는 제3920호 또는 제3921호에 속하는 플라스틱 판, 시트, 필름 등으로 직물과 합지 또는 봉제 또는 라미네이팅 공정을 통해 생산, 플라스틱 일차제품을 원재료로 성형하여 생산하여도 무방	동일 호내의 바닥 깔개(반제품)를 제3920호 또는 제3921호의 원재료와 합지하는 공정만 수행하는 경우 적용 제외
66	3919.10-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 · 시트(sheet) · 필름	<제외대상> -영구적인 접착성이 없는 물품(예: 포스트 잇)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플라스틱 일차제품 또는 제3920호의 판·시트(sheet)·필름·	접착성이 있는 판·시트(sheet)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름·박(箔)·테이프·스트립 (롤 모양의 폭이 20센티미터 이하인 것)	-평면모양이 아닌 것(제3926호)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박(箔)·스트립을 주요 원재료로 생산	· 필름·박(箔)·스트립 등을 원재료로 재단·인쇄 등의 단순 공정만 거치는 경우 적용 제외
67	3919.90-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 (롤 모양의 것은 제외)	<제외대상> -영구적인 접착성이 없는 물품(예: 포스트 잇) -평면모양이 아닌 것(제3926호)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제3920호 또는 제3921호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을 주요 원재료로 합치 공정을 거쳐 생산	접착성이 있는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 등을 원재료로 재단·인쇄 등의 단순 공정만 거치는 경우 적용 제외
68	3920.10-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제외대상> -판이나 시트에 구멍을 내거나 모서리 연마 등 그 이상의 가공처리를 한 것  -다른 재료로 적층, 보강한 것(제3918호, 제3919호, 제3922호~3926호 등)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인도네시아 CEPA	플라스틱 일차제품인 폴리에틸렌을 원재료로 원료배합, 압출성형 공정을 거쳐 생산	플라스틱 필름을 공급받아 합치 공정을 통해 생산 시 적용 제외
69	3920.20-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제외대상> -판이나 시트에 구멍을 내거나 모서리 연마 등 그 이상의 가공처리를 것  -다른 재료로 적층, 보강한 것(제3918호, 제3919호, 제3922호~3926호 등)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플라스틱 일차제품(제3901호~제3914호)과 첨가제(제38류 또는 제29류)를 사용하여 압출성형 공정을 거쳐 생산	플라스틱 필름을 공급받아 합치 공정을 통해 생산 시 적용 제외
70	3920.30-0000	스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ABS(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	한-아세안 FTA, 한-중 FTA,	주요 원재료를 투입하여 압출하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것	스티렌 공중합체) 주성분의 플라스틱 시트임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고 보호필름을 부착하여 절삭하여 생산	
71	3920.49-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전 중량의 100분의 6 미만의 가소제를 함유)	- "판·시트·필름·박·스트립"의 정의는 제39류 주10호 참조  - 가소제 함량(6% 미만) 기준은 제3920호 소호해설 참조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제39류 염화비닐 일차제품에 가소제 등을 배합하고 용융·압연·절단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 - 용융(melting)·압연(rolling) 등 성형공정 필수	염화비닐 원단에 인화제 등 단순공정만 거친 경우 제외
72	3920.51-0000	플라스틱(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 재질 외의 아크릴중합체 것)으로 만든 판, 시트, 필름, 박, 스트립	<제외대상> - 외관상 시폭이 5mm이하 (제39류 주10호 참조) - 다른 재료로 적층, 보강 한 것 (제3921호)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플라스틱 일차제품 (제3901호~3914호) 및 플라스틱 웨이스트(제3915호)를 기본 원재료로 사출 또는 압출성형 공정을 거쳐 생산	
73	3920.61-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것)	- "판·시트·필름·박·스트립"의 정의는 제39류 주10호 참조  <제외대상> - 셀룰러(cellular)의 것-외관상 시폭이 5mm이하의 것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제39류 폴리카보네이트 일차제품에 가소제 등을 배합하고 용융·압연·절단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 - 용융(melting)·압연(rolling) 등 성형공정 필수	압출한 시트에 보호필름을 부착하는 경우 제외
74	3920.99-9090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	폴리아세탈 수지로 만든 판·시트(sheet)  - "판·시트·필름·박·스트립"의 정의는 제39류 주10호 참조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제39류 플라스틱 일차제품에 가소제 등을 배합하고 용융·압연·절단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 - 용융(melting)·압연(rolling) 등 성형공정 필수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불화폴리이미드로 만든 것 제외)				
75	3921.13-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제외대상> -판이나 시트에 구멍을 내거나 모서리 연마 등 그 이상의 가공 처리를 것 -다른 재료로 적층, 보강한 것(제3918호, 제3919호, 제3922호~3926호 등)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플라스틱 일차제품 또는 보강하지 않은 플라스틱 판·시트·필름을 주요 원재료로 셀룰러(cellular)의 물품이나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공정을 거쳐 생산	
76	3921.19-1010	플라스틱 판, 시트 등 (에틸렌중합체로 만든 것으로 이차전지 격리막 제조용의 것)	<제외대상> -판이나 시트에 구멍을 내거나 모서리 연마 등 그 이상의 가공 처리를 것 -다른 재료로 적층, 보강한 것(제3918호, 제3919호, 제3922호~3926호 등)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플라스틱 일차제품을 주요 원재료로 성형하여 생산	여 리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 등을 적층하여 생산하는 경우 적용 제외
77	3921.90-1000	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는 제외)	제3918호~제3920호, 인조섬유를 제외한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판·시트·필름·박·스트립"의 정의는 제39류 주10호 참조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제39류 에틸렌 일차제품에 가스제 등을 배합하고 용융·압연·절단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용융(melting)·압연(rolling) 등 성형공정 필수	
78	3921.90-4020	염화비닐 중합체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연질의 것으로 셀룰러는 제외)	제3918호~제3920호, 인조섬유를 제외한 연질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판·시트·필름·박·스트립 -"판·시트·필름·박·스트립"의 정의는 제39류 주10호 참조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제39류 염화비닐 일차제품에 가스제 등을 배합하고 용융·압연·절단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용융(melting)·압연(rolling) 등 성형공정 필수	
79	3923.10-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상자·케이스·바구니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제외대상> -가정용품(예: 쓰레기통) 또는 식탁용품(예: 양념통, 주전자)(제3924호)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플라스틱 일차제품 또는 제3920호(플라스틱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를 주요 원재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벌크 컨테이너 (제6305호) -신변장식용품 (제4202호)		료로 사용하여 생산	
80	3923.2 1-0000	에틸렌중합체 로 만든 포장 대[콘(cone) 을 포함한다]	에틸렌중합체 로 만든 포장용기  <제외대상> -가정용품(제3924 호) -벌크형 컨테이 너(제6305호)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주요 원재료는 제3920호 또는 제3921호에 속하 는 플라스틱 판, 시트, 필름 등으 로 합지하는 공 정을 거쳐 생산, 플라스틱 일차 제품을 원재료로 압출하여 생산 하여도 무방	
81	3923.2 9-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포장대 [콘(cone)도 포함한다] (에틸렌중합 체로 만든 것 은 제외)	<제외대상> -가정용품(예: 쓰 레기통) 또는 식 탁용품(예: 양념 통, 주전자)(제 3924호) -벌크 컨테이너 (제6305호) -신변장식용품 (제4202호)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보강하지 않은 플라스틱 판·시 트(제3920호), 폴 리우레탄(제3909 호), 플라스틱 일 차제품(제3901호 및 제3909호, 제 3907호) 등을 주 요 원재료로 생 산	
82	3923.3 0-0000	카보이 (carboy)·병· 플라스크 (flask)와 이 와 유사한 물 품	<제외대상> -가정용품(예: 쓰 레기통) 또는 식 탁용품(예: 양념 통, 주전자) (제 3924호) -벌크 컨테이너 (제6305호) -신변장식용품 (제4202호)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플라스틱 일차제 품을 사출·성형 공정을 거쳐 생 산	병·뚜 껍·마 개·캡 (제 3923.50 호)을 공급받 아 결합 한 물품 은 적용 제외
83	3924.1 0-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 품과 주방용 품	플라스틱으로 만 든 식품 보관용 기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제39류 플라스틱 일차제품에 안료 나 가소제 등을 배합한 후 용융 (melting)·사출 (injection) 등의 공정을 거쳐 생 산 -용융(melting)· 사출성형 (injection molding) 공정 필수	병·뚜 껍·마 개·캡 (제 3923.50 호)을 공급받 아 결합 한 물품 은 적용 제외
84	3926.9 0-9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손톱을 연장하거 나 꾸밀 때 쓰는 인조 손톱 등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제39류 플라스틱 일차제품에 안료 나 가소제 등을 배합한 후 용융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melting) · 사출 (injection)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 -용융(melting) · 사출 성형 (injection molding) 공정 필수	
85	4002.11-0000	스티렌-부타디엔 고무 라텍스	스티렌-부타디엔 고무로 만든 일차제품 (판·시트·스트립) 형상(라텍스) *제40류 주3호 참조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스티렌과 부타디엔을 주요 원재료로 유화제 등을 공중합하여 생산	합성 라텍스 폴리머(제4002.11호)와 기타 화학제품으로 교반과정만 거칠 경우 적용 제외
86	4002.20-9000	부타디엔고무 (라텍스는 제외)	부타디엔을 중합하여 만든 합성고무 <제외대상> -가황제나 활성화제, 가소제, 안료 (식별을 위한 안료 첨가는 허용) 등의 물질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중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부타디엔 (제2901.24호)을 원재료로 중합반응 및 성형 공정을 거쳐 생산	
87	4002.59-0000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 고무 (NBR) (라텍스는 제외한다)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 고무 (NBR)로 만든 일차제품형상(라텍스는 제외한다) *제40류 주3호 참조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폴리부타디엔 라텍스를 스티렌과 아크로니트릴 (SAN)을 그래프팅 시키는 공정을 거쳐 생산	합성 라텍스 폴리머(제4002.11호)와 기타 화학제품으로 교반과정만 거칠 경우 적용 제외
88	4005.10-1000	가황하지 않은 배합 고무로 만든 판·시트(sheet)·스트립	가소제 등과 같은 배합제를 첨가한 고무 <제외대상> -재생고무(제4003호) -방직용 직물제에 고무판이 보강된 경우(제5906호)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천연고무(제4001호) 또는 합성고무(제4002호)와 카본블랙(제2803.00호) 등을 주요 원재료로 원료 배합, 성형, 시트냉각 공정을 거쳐 생산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89	4009.21-0000	금속으로만 보강되거나 결합된 관·파이프·호스(연결구를 부착한 것은 제외한다)	금속으로 보강된 고무재질(가황)의 관·파이프·호스(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 등의 연결구류가 부착되지 않은 것) <제외대상> -절단(세로) 길이가 관의 횡단면 치수보다 작은 것(예 : 이너튜브, 제조용 튜빙)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제4001호~제4008호의 고무를 주요 원재료로 압출 또는 성형 공정을 거치고 금속 와이어 등으로 보강 공정을 거쳐 생산	
90	4009.31-0000	방직용 섬유재료로만 보강되거나 결합된 호스(연결구를 부착한 것 제외한다)	방직용 섬유로 보강된 고무재질(가황)의 관·파이프·호스(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 등의 연결구류가 부착되지 않은 것) <제외대상> -절단 길이가 횡단면 치수보다 작은 것(예 : 이너튜브 제조용 관 등) -직조한 호스(제5909호)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제4001호~제4008호의 고무를 주요 원재료로 압출 또는 성형 공정을 거치고, 섬유재료로 보강 공정을 거쳐 생산	
91	4009.32-0000	방직용 섬유재료로만 보강되거나 결합된 호스(연결구를 부착한 것)	방직용 섬유로 보강된 고무재질(가황)의 관·파이프·호스로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등 연결구류가 부착된 것 <제외대상> -절단 길이가 횡단면 치수보다 작은 것(예: 이너튜브 제조용 관 등) -직조한 호스(제5909호)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제4001호~제4008호의 고무를 주요 원재료로 압출 또는 성형 공정을 거치고, 섬유재료로 보강 공정을 거쳐 생산	고무 호스를 공급받아, 플라스틱 또는 금속 재질의 연결구 부착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적용 제외
92	4011.10-1000	고무 타이어 [래디알 구조	<제외대상> -재생품이나 중	한-중 FTA, 한-베트남 FTA,	정련, 압출, 압연, 비드, 성형, 가류	역내산 또는 역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의 것(승용자동차용, 스테이션 왜건과 경주 자동차용 포함)	고 타이어(제 4012호)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인도네시아 CEPA	공정을 거쳐 생산	외산 타이어 반제품을 원재료로 생산한 물품은 적용 제외
93	4011.20-1010	고무 타이어 [버스용, 화물차용 (레디알 구조의 것으로 림의 지름이 49.53센티미터 미만인 것)]	<제외대상> -재생품이나 중고 타이어(제 4012호)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정련, 압출, 압연, 비드, 성형, 가류 공정을 거쳐 생산	역내산 또는 역외산 타이어 반제품을 원재료로 생산한 물품은 적용 제외
94	4011.20-1090	고무 타이어 [버스용, 화물차용 (레디알 구조의 것으로 림의 지름이 49.53센티미터 이상인 것)]	<제외대상> -재생품이나 중고 타이어(제 4012호)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정련, 압출, 압연, 비드, 성형, 가류 공정을 거쳐 생산	역내산 또는 역외산 타이어 반제품을 원재료로 생산한 물품은 적용 제외
95	4016.93-0000	가황한 고무 제품 [ 개스킷 (gasket)·와셔(washer)·그 밖의 실(seal)]	<제외대상> -황의 배합률이 높은 딱딱한 경질(hard) 고무로 만든 것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성형 공정을 거쳐 생산	성형된 반제품을 원재료로 커팅 공정(BURR 제거 또는 불필요한 부분 제거)만 거친 경우 적용 제외
96	4107.92-0000	소나 마속의 가죽 (grain split)	<제외대상> -원피(제4101호) -그레인 스플릿(제4104호) -전신(whole)가죽(제4107호) -새미(chamois)가죽(제4114호)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소나 마속의 원피(제4101호) 또는 유연처리된 소나 마속의 원피(제4104호)를 광물성 물질로 태닝(tanning)한 후 탈수, 건조 등의 공정을 통해 생산	
97	4114.20-1000	페이턴트레더 (적층한 것은)	에나멜 도료 등을 도포한 가죽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가죽에 바니시(varnish)·라커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제외)	-표면 처리한 도료나 시트의 두께가 0.15m 초과하지 않을 것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lacquer)나 미리 성형한 플라스틱의 시트(sheet)를 도포하거나 피복하여 생산	
98	4805.24-9000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이하인 테스트 라이너(testliner)(재생 라이너 판)(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제외)	회수한 종이로 만든 도포하지 않은 종이와 판지(뮤렌 과열강도 2kPa·m <sup>2</sup> /g이상의 것) -"재생라이너 판" 정의는 제48류 소호주 제5호 참조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제47류 회수한 종이를 기계·화학적 방법으로 펄프화하고, 이를 종이(sheet) 모양으로 펄트(felt)화시킨 후 재단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 - 펄프화·제지화 공정 필수	
99	4810.29-0000	필기용, 인쇄용, 그 밖의 그래픽용 종이와 판지(기계공정이거나 화학-기계공정에 따른 섬유 함유량이 전 섬유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경량의 도포한 종이는 제외)	<제외대상> -전사지(제4809호), 카본지(제4809호), 오프셋 인쇄용 종이(제4816호)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화학펄프(제4703호, 제4705호 등)에 물과 화공품을 섞어 고온으로 찌서 무기물질 등으로 도포하여 생산	
100	4810.92-1010	여러 겹의 종이(제곱미터당 중량이 250그램 이하인 것)	<제외대상> -감광지(제3710호) -전사지·카본지(제4809호) -벽지(제4814호) -오프셋인쇄종이(제4816호) -엽서(제4817호)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화학펄프(제4703호, 제4705호 등)에 물과 화공품을 섞어 고온으로 찌서 무기물질 등으로 도포하여 생산	
101	4810.92-9000	여러 겹의 종이(백판지와 아이보리 판지는 제외)	<제외대상> -감광지(제3710호) -전사지·카본지(제4809호) -벽지(제4814호) -오프셋인쇄종이(제4816호) -엽서(제4817호)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화학펄프(제4703호, 제4705호 등)에 물과 화공품을 섞어 고온으로 찌서 무기물질 등으로 도포하여 생산	
102	5205.2	표백하지 않	면 함유량이 전	한-아세안 FTA,	제52류 면섬유를	소매용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3-1000	거나 머서 (mercer)처리 하지 않은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면 단사 [미터식 변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이고 코움 (comb)한 섬유의 것으로 한정]	중량의 85% 이상인 면사(재봉사와 소매용 제외)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혼타면·커딩·연조·조방·정방공정 등을 거쳐 생산-연조(drawing)·조방(roving)·정방(spinning) 등 방적공정 필수	의 면사는 제 5207호에 분류
103	5402.11-0000	아라미드로 만든 강력사	폴리아미드 재질의 강력사 (강도: 단사 60cN/Tex 초과, 복합사는 53cN/Tex 초과) *제11부 주6호 참조  <제외대상> -소매용(제5406호), 끈(제5607호), 금속드리사(제5605호)등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화학재료로 방사공정을 거쳐 생산	
104	5402.20-0000	강력사[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한정하며, 텍스처화한 (textured) 것인지에 상관없다]	폴리에스테르 재질의 강력사(강도:단사60cN/Tex 초과, 복합사는 53cN/Tex 초과) *제11부 주6호 참조  <제외대상> -소매용(제5406호), 끈(제5607호), 금속드리사(제5605호) 등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화학재료로 방사공정을 거쳐 생산	강력사를 공급받아 합연·와인딩(winding) 공정만 수행하는 경우 적용 제외
105	5407.10-2000	강력사(폴리에스테르의 것)의 직물	- "강력사" 정의는 제11부 주 제6호 참조 - "직물" 정의는 제11부 총설(I), (C) 직물(woven fabrics) 참조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제39류 폴리에스테르 일차제품을 방사(spinning)하여 직조하거나, 제5402호의 폴리에스테르 강력사를 직조(weaving)하여 생산 직조(weaving)공정은 필수	
106	5407.4	염색한 합성	제5407.10호부터	한-아세안 FTA,	주로 합성 필라	염색공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2-0000	필라멘트사의 직물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 아미드필라멘 트의 함유량 이 전중량의 100분의 85이 상인 것)	제5407.30호의 것 을 제외한 나일 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 필라 멘트사로 직조한 염색(dyeing) 직 물(백색제외)  <제외대상> -합성스테이플사 로 만든 직물 (제5512호)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멘트사(제5402호) 로 직물을 만들 고 여기에 안료 등으로 염색하여 제조 -원사는 역외산 사용 가능 *염색(dyeing): 사나 직물을 염 색욕에 넣고 가 열, 후처리하여 전체에 균일한 색상을 부여	정만 거 친 경우 적용 제 외
107	5407.5 2-0000	염색한 합성 필라멘트사의 직물 (텍스처드 폴 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 의 85 이상인 것)	텍스처드한 폴리 에스테르 필라멘 트사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 의 85이상의 염 색(dyeing) 직물  <제외대상> -고강력의 타어 어 코드 직물(제 5902호)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주로 합성 필라 멘트사(제5402호) 로 직물을 만들 고 여기에 안료 등으로 염색하여 제조 -원사는 역외산 사용 가능 *염색(dyeing): 사나 직물을 염 색욕에 넣고 가 열, 후처리하여 전체에 균일한 색상을 부여	염 색 공 정만 거 친 경우 적용 제 외
108	5407.5 3-0000	서로 다른 색 실로 된 합성 필라멘트사의 직물(텍스처 드 폴리에스 테르 필라멘 트의 함유량 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 "색실"의 정의는 제11부 소호주 제1호(사) 참조 - "직물" 정의는 제11부 총설(I), (C) 직물(woven fabrics) 참조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제39류 폴리에스 테르 일차제품을 방사(spinning)하 여 직조하거나, 제5402호의 텍스 처드 폴리에스테 르 필라멘트를 직조(weaving)하 여 생산직조 (weaving)공정 필수	고 강 력 타 이 어 코드 직 물은 제 5902호 에 분류
109	5407.6 1-1000	표백하지 않 은 것이나 표 백한 직물 (비(非)텍스 처드 폴리에 스테르필라멘 트의 함유량 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비 텍스처드한 폴리에스테르 필 라멘트사가 전중 량의 100분의 85 이상을 표백한 직물  <제외대상> -여과포 등 기계 에 사용되는 공 업용의 직물(제 5911호) * 표백의 정의는 제11부 소호주 1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주로 합성 필라 멘트사(제5402호) 로 직물을 만들 고 여기에 안료 등으로 염색하여 제조 -원사는 역외산 사용 가능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호 참조			
110	5407.6 1-2000	염색한 합성 필라멘트사의 직물 (비(非)폴리 에스테르필라 멘트의 함유 량이 전중량 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비(非) 텍스처드 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가 전 중량의 100분의 85이상의 염색 (dyeing) 직물 * 염색의 정의는 제11부 소호주 1호 참조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주로 합성 필라 멘트사(제5402호) 로 직물을 만들 고 여기에 안료 등으로 염색하여 제조 -원사는 역외산 사용 가능 *염색(dyeing): 사나 직물을 염 색욕에 넣고 가 열, 후처리하여 전체에 균일한 색상을 부여	염 색 공 정만 거 친 경우 적용 제 외
111	5407.6 1-4000	날염한 합성 필라멘트사의 직물 (비(非)폴리 에스테르필라 멘트의 함유 량이 전중량 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비(非) 텍스처드 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의 함 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이상 의 날염(printing) 직물 * 날염의 정의는 제11부 소호주 1호 참조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주로 합성 필라 멘트사(제5402호) 로 직물을 만들 고 여기에 안료 등으로 염색하여 제조 -원사는 역외산 사용 가능	날 염 공 정만 거 친 경우 적용 제 외
112	5407.6 9-2000	합성필라멘트 사의 염색한 직물 (비(非)폴리 에스테르필라 멘트의 함유 량이 전중량 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비(非) 텍스처드 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의 함 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5초과 100분의 85미만 의 염색(dyeing) 직물 * 염색의 정의는 제11부 소호주 1호 참조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주로 합성 필라 멘트사(제5402호) 로 직물을 만들 고 여기에 안료 등으로 염색하여 제조 -원사는 역외산 사용 가능	염 색 공 정만 거 친 경우 적용 제 외
113	5407.6 9-4000	합성필라멘트 사의 날염 직 물 (비(非)폴리 에스테르 필 라멘트의 함 유량이 전중 량의 100분의 85이상인 것)	비(非) 텍스처드 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의 함 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5초과 100분의 85미만 의 날염(printing) 직물 * 날염의 정의는 제11부 소호주 1호 참조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주로 합성 필라 멘트사(제5402호) 로 직물을 만들 고 여기에 안료 등으로 염색하여 제조 -원사는 역외산 사용 가능	날 염 공 정만 거 친 경우 적용 제 외
114	5407.7 2-0000	염색한 그 밖 의 직물 (합성 필라멘 트의 함유량 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제5407.10호부터 제5407.69호의 것 을 제외한 그 밖 의 합성 필라멘 트사로 직조한 염색(dyeing) 직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주로 합성 필라 멘트사(제5402호) 로 직물을 만들 고 여기에 안료 등으로 염색하여 제조	염 색 공 정만 거 친 경우 적용 제 외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이상인 것)	물 * 염색의 정의는 제11부 소호주 1호 참조	한-인도네시아 CEPA	-원사는 역외산 사용 가능	
115	5407.82-2000	염색한 폴리에스테르직물 (합성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미만인 것으로 주로 면과 혼방한 것)	제5407.10호부터 제5407.69호의 것을 제외한 그 밖의 합성 필라멘트사로 직조한 염색(dyeing) 직물 * 염색의 정의는 제11부 소호주 1호 참조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주로 합성 필라멘트사(제5402호)로 직물을 만들고 여기에 안료 등으로 염색하여 제조 -원사는 역외산 사용 가능	염색 공정만 거친 경우 적용 제외
116	5407.92-2000	염색한 폴리에스테르 직물	제5407.10호부터 제5407.84호의 것을 제외한 그 밖의 합성필라멘트사로 직조한 염색(dyeing)직물 * 염색의 정의는 제11부 소호주 1호 참조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주로 합성 필라멘트사(제5402호)로 직물을 만들고 여기에 안료 등으로 염색하여 제조 -원사는 역외산 사용 가능	직물 염색 공정만 거친 경우 적용 제외
117	5502.10-1000	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 토우 (tow) (44,000 데시텍스 미만인 것)	목재나 펄프 등의 섬유소를 용해하여 만든 재생·반합성필라멘트 토우 -'제55류 주1호'에서 규정한 5가지 토우의 요건 충족필요	한-아세안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초산 셀룰로오스를 주원재료로 생산	
118	5503.20-1000	폴리에스테르의 섬유(이형단면인 것) [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	합성 섬유사를 방적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솜모양으로 만든 섬유(이형단면의 것*) *방사구를 원형이 아닌 Y형 등 여러 모양으로 하여 횡단면을 변형한 것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화학재료로 방사공정을 거쳐 생산  방사구를 통해 만들어진 인조필라멘트사를 절단한 후 토우(병합)로 묶어 섬유모양으로 생산	제5401호부터 제5406호에 해당하는 재료를 공급받아 제전(制電: antistatic)처리하거나, 절단 공정만 수행하는 경우 적용 제외
119	5503.20-9000	폴리에스테르의 합성스테이플 섬유 [카드]	합성된 스테이플 섬유 중 최대 중량이 폴리에스테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플라스틱 일차제품(수지)을 원재료로 방사공정을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 (이형단면인 것 제외)	르에 있는 것 <제외대상> -길이 2m를 초과(제5501호) -카드나 코움 이상으로 처리된 것(제5506호)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거쳐 생산	
120	5503.40-0000	폴리프로필렌의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	- "인조스테이플섬유(단섬유)" 정의는 제55류 총설 참조	한-아세안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제39류 폴리프로필렌 일차제품을 방사(spinning)하여 토우(tow)를 만들고 권축(crimp)·절단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 -방사(spinning)·토우(tow) 공정 필수	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은 제5506호에 분류
121	5503.90-0000	기타의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폴리에스테르의 것,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폴리프로필렌의 것 제외)	기타의 합성섬유사를 방적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슝모양으로 만든 섬유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화학재료로 방사공정을 거쳐 생산	제5401호부터 제5406호에 해당하는 재료를 공급받아 제전(制電: antistatic)처리하거나, 절단 공정만 수행하는 경우 적용 제외
122	5601.22-0000	인조섬유로 만든 워딩(wadding)과 워딩(wadding)의 그 밖의 제품	인조섬유로 만든 담배필터 -"제품" 정의는 제11부 총설(II) "제품으로 된 것(made up article)" 부분 참조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제39류 아세트산셀룰로오스 일차제품을 방사하여 토우(tow)를 직접 만들거나, 제5502호 아세테이트 토우에 가소제 등을 첨가하여 형상을 만들고 재단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토우(tow) 또는 "제품" 성형공정 필수	제5502호 아세테이트 토우를 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특정제품으로 인정할 만한 가공이 있어야 함
123	5607.4	폴리에틸렌이	"로프" 등의 요건	한-아세안 FTA,	제39류 플라스틱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9-0000	나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든 끈·배의 밧줄 (cordage)·로프·케이블[여거나 짠 것인지, 고무나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시드한 (sheathed) 것인지에 상관없다]	은 제11부 총설 (I) (B)실(yarn), "(1)총설"과 "(2)표 I" 부분 참조  <제외대상> -연마재를 도포한 것(제6805호) -포장용 끈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일차제품을 방사하거나 제54류 인조 필라멘트사를 합사(twist)·연선 (wire stranding) 한 후 코팅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합사(twist)·연선 (wire stranding) 공정 필수	
124	5807.10-1000	직조하여 생산한 레이블	상표 등을 표시하기 위한 섬유 레이블  <제외대상> -수를 놓은 것(제5810호) -의류의 부착품 성격을 가진 견장·완장·휘장(제6217호)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직조공정을 거쳐 생산	
125	5902.20-0000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강력사의 타이어 코드 직물	타이어 제조 시 보강재로 사용되는 폴리에스테르제 직물  <제외대상> -제11부 주6호의 강력사 기준 미충족 -고무로 피복·적층한 직물(제5906호)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실로부터 생산되거나,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등을 직조 (weaving) 하여 생산한 경우 -원사는 역외산 사용가능	
126	5903.10-0000	폴리(염화비닐)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방직용 섬유제 직물에 폴리염화비닐을 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  <제외대상> -플라스틱이 단순 보강목적인 경우 -플라스틱이 직물을 완전히 도포·피복한 경우 -침투, 도포된 플라스틱이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제50~55류)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실로부터 생산되거나, 직물을 제단하고 플라스틱을 도포, 피복, 적층하고 열처리, 방축가공 등의 마감처리를 하여 생산 -원사는 역외산 사용해도 가능 -제59류 이외의 역외산 직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도포나 피복, 열처리 등의 최소 2가지 이상의 공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딱딱하지 않을 것 ※제59류 주2호 참조		정을 거쳐서 생산된 것	
127	5903.20-0000	폴리우레탄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 의 직물	방직용 섬유제 직물에 폴리우레탄을 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  <제외대상> -플라스틱이 단순 보강목적인 경우 -플라스틱이 직물을 완전히 도포·피복한 경우 -침투, 도포된 플라스틱이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제50~55류) -딱딱하지 않을 것 ※ 제59류 주2호 참조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실로부터 생산되거나, 직물을 제단하고 플라스틱을 도포, 피복, 적층하고 열처리, 방축가공 등의 마감처리를 하여 생산 -원사는 역외산 사용해도 가능 -제59류 이외의 역외산 직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도포나 피복, 열처리 등의 최소 2가지 이상의 공정을 거쳐서 생산된 것	
128	5903.90-0000	플라 스틱 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폴리(염화비닐) 및 폴리우레탄의 것은 제외]	방직용 섬유제 직물에 폴리염화비닐과 폴리우레탄 이외의 플라스틱재질로 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  <제외대상> -플라스틱이 단순 보강목적인 경우 -플라스틱이 직물을 완전히 도포·피복한 경우 -침투, 도포된 플라스틱이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제50~55류) -딱딱하지 않을 것 ※ 제59류 주2호 참조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실로부터 생산되거나, 직물을 제단하고 플라스틱을 도포, 피복, 적층하고 열처리, 방축가공 등의 마감처리를 하여 생산 -원사는 역외산 사용해도 가능 -제59류 이외의 역외산 직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도포나 피복, 열처리 등의 최소 2가지 이상의 공정을 거쳐서 생산된 것	
129	6001.10-2000	인 조 섬유 로 만든 롱파일 (long pile) 편물	합성섬유로 만든 롱파일(long pile) 편물  <제외대상> -파일직물(제5801호), 테리 타올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인조 스테이플 섬유나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펠프 등을 편직하여 만든 것, 직물로 만든 경우 직물표면에 기모나	직물 염색 공정만 거친 경우 적용 제외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지와 테리직물(제5802호), 터프트(tuft)한 직물(제5802호), 편물로 만든 양탄자지(제5705호), 인조모피(제4304호)		루프를 형성한 것 -원사는 역외산 사용 가능	
130	6001.21-0000	면으로 만든 루프파일(looped pile) 편물	면(최대중량)으로 만든 루프(loop)상의 편물  <제외대상> -파일직물(제5801호) -테리 타올지와 테리직물(제5802호) -터프트(tuft)한 직물(제5802호) -편물로 만든 양탄자지(제5705호), 인조모피(제4304호)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천연섬유 등을 편직하여 만든 것, 직물로 만든 경우 직물표면에 기모나 루프를 형성한 것 -원사는 역외산 사용 가능	직물 염색 공정만 거친 경우 적용 제외
131	6001.22-0000	인조섬유로 만든 루프파일(looped pile) 편물	합성섬유(최대중량)로 만든 루프(loop)상의 편물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인조 스테이플 섬유나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등을 편직하여 만든 것, 직물표면에 루프 등을 형성하고 염색 등의 공정을 거친 것 -원사는 역외산 사용 가능	직물 염색 공정만 거친 경우 적용 제외
132	6001.92-0000	기타 편물(인조섬유로 만든 것)	롱파일, 루프파일을 제외한 기타의 편물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인조 스테이플 섬유나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등을 편물기계로 편직하여 생산 -원사는 역외산 사용 가능	직물 염색 공정만 거친 경우 적용 제외
133	6004.10-0000	메리야스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cm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사의 함유 중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	한 가닥의 실로 루프를 형성하여 만든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제외대상> -파일편물(제6001호)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천연사 또는 인조섬유사를 편직하여 생산 -원사는 역외산 사용 가능	직물 염색 공정만 거친 경우 적용 제외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이상이며, 고무실은 함유하지 않은 것)	-폭이 30cm 이하의 것 -탄성사, 고무사 함량이 5% 미만 -제품 형상으로 만든 것			
134	6004.90-0000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폭이 30cm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고무사의 함유중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것)	한 가닥의 실로 루프를 형성하여 만든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제외대상> -파일편물(제6001호) -폭이 30cm 이하의 것 -탄성사, 고무사 함량이 5% 미만 -제품 형상으로 만든 것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천연사 또는 인조섬유사를 편직하여 생산 -원사는 역외산 가능	직물 염색 공정만 거친 경우 적용 제외
135	6005.35-2000	합성섬유로 만든 경편직 직물류 (염색한 것) (중량이 1제곱미터당 30그램 이상 55그램 이하이며 메시(mesh)의 크기가 1제곱센티미터당 20홀 이상 100홀 이하인 폴리에틸렌모노필라멘트 또는 폴리에스테르멀티필라멘트로 된 직물)	합성섬유사(최대중량을 세로방향으로 공급하여 고리끼리 연결하는 사다리 꿰매기형의 경편직물(warp knit fabrics)  <제외대상> -파일편물(제6001호) -폭이 30cm 이하의 것 -탄성사, 고무사 함량이 5% 미만 -제품 형상으로 만든 것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합성섬유사 등을 제직하여 직물을 만들고 이에 염료나 안료 등으로 염색하여 생산 -원사는 역외산 사용 가능	염색 공정만 거친 경우 적용 제외
136	6005.36-0000	기타 합성섬유로 만든 경편직 편물류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 "경편직(warp knits)" 정의는 제60류 총설(A) 메리야스 편물(knitted fabrics) (II)부분 참조 - "표백" 정의는 제11부 소호주 제1호(마)목 참조 <제외대상>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제54류 합성필라멘트사를 편직(knitting)하여 표백·재단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편직(knitting)·재단 공정은 필수 -원사는 역외산 가능	편물을 공급받아 표백 공정만 거친 경우 적용 제외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편직이 아닌 경사나 위사를 교차시켜 제작한 직물			
137	6005.37-0000	기타 합성섬유로 만든 경편직 편물류 (염색한 것)	- "경편직 (warp knits)" 정의는 제60류 총설(A) 메리야스 편물 (knitted fabrics) (II) 부분 참조 - "염색한 직물" 정의는 제11부 소호주 제1호 (바)목 참조  <제외대상> - 경사나 위사를 교차시켜 제작한 직물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제54류 합성필라멘트사를 편직(knitting)한 후 염색·재단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 - 편직(knitting)·재단·염색공정은 필수 - 원사는 역외산 가능	편물 을 받 을 공 급 아 공 정 만 경 우 적 용 제 외
138	6006.22-0000	면으로 만든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염색한 것)	면사(최대중량)를 한가닥의 실로루프를 형성하여 만든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제외대상> - 파일편물(제6001호) - 폭이 30cm 이하의 것 - 탄성사, 고무사 함량이 5% 이상 - 제품 형상으로 만든 것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면사 등을 편직하여 편물을 만들고 이에 염료나 안료 등으로 염색하여 생산 - 원사는 역외산 사용 가능	염 색 공 정 만 거 친 경 우 적 용 제 외
139	6006.23-0000	면으로 만든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서로 다른 색실의 것)	면사(최대중량)를 한 가닥의 실로루프를 형성하여 만든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제외대상> - 파일편물(제6001호) - 폭이 30cm 이하의 것 - 탄성사, 고무사 함량이 5% 이상 - 제품 형상으로 만든 것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서로 다른 색의 면사 등을 편직하여 편물을 만들어 생산 - 원사는 역외산 사용 가능	
140	6006.2	면으로 만든	면사(최대중량)를	한-아세안 FTA,	면사 등을 편직	날 염 공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4-0000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날염한 것)	한 가닥의 실로 루프를 형성하여 만든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제외대상> -파일편물(제6001호) -폭이 30cm 이하의 것 -탄성사, 고무사 함량이 5% 이상 -제품형상으로 만든 것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하여 편물을 만들어 생산하고 염료나 안료 등으로 날염(printing)하여 생산 -원사는 역외산 사용 가능	정만 거친 경우 원산지 증명 적용 제외
141	6006.32-0000	합성섬유로 만든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염색한 것)	합성섬유사(최대중량)를 한 가닥의 실로 루프를 형성하여 만든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제외대상> -파일편물(제6001호) -폭이 30cm 이하의 것 -탄성사, 고무사 함량이 5% 이상 -제품형상으로 만든 것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합성섬유사 등을 편직하여 편물을 만들고 염료나 안료 등으로 염색(dyeing)하여 생산 -원사는 역외산 사용 가능	염색 공정만 거친 경우 원산지 증명 적용 제외
142	6006.34-0000	합성섬유로 만든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날염한 것)	합성섬유사(최대중량)를 한가닥의 실로 루프를 형성하여 만든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편물 <제외대상> -파일편물(제6001호) -폭이 30cm 이하의 것 -탄성사, 고무사 함량이 5% 이상 -제품형상으로 만든 것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합성섬유사 등을 편직기계를 이용해 직물을 만들고 이에 염료나 안료 등으로 날염(printing)하여 생산 -원사는 역외산 사용 가능	날염 공정만 거친 경우 적용 제외
143	6006.42-0000	재생·반(半) 합성섬유로 만든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염색)	재생·반합성 섬유사(최대중량)를 한가닥의 실로 루프를 형성하여 만든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재생·반합성 섬유사 등을 편직하여 편물을 만들고 염료나 안료 등으로 염색(dyeing)하여 생	염색 공정만 거친 경우 적용 제외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한 것)	편물  <제외대상> -파일편물(제6001호) -폭이 30cm 이하의 것 -탄성사, 고무사 함량이 5% 이상 -제품형상으로 만든 것	한-인도네시아 CEPA	산	
144	6006.44-0000	재생·반(半)합성섬유로 만든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날염한 것)	재생·반합성 섬유사(최대중량)를 한가닥의 실로 루프를 형성하여 만든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제외대상> -파일편물(제6001호) -폭이 30cm 이하의 것 -탄성사, 고무사 함량이 5% 이상 -제품형상으로 만든 것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재생·반합성 섬유사 등을 편직하여 편물을 만들고 이에 염료나 안료 등으로 날염(printing)하여 생산 -원사는 역외산 사용 가능	날염 공정만 거친 경우 적용 제외
145	6006.90-0000	그 밖의 메리야스편물이나 뜨개질편물 (기타의 것)	기타 재질(양모, 면, 합성섬유, 재생섬유 제외)를 한가닥의 실로 루프를 형성하여 만든 메리야스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제외대상> -파일편물(제6001호) -폭이 30cm 이하의 것 -탄성사, 고무사 함량이 5% 이상 -제품형상으로 만든 것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기타 재질(양모, 면, 합성 섬유, 재생섬유제외)의사를 편직하여 편물을 생산 -원사는 역외산 사용가능	
146	6116.10-0000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장갑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	편물제 방직용 섬유로 만든 장갑으로 겉면을 도포된 것  <제외대상> -모피나 인조모	한-중 FTA, RCEP,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면사 등을 편직기계를 이용해 편성 후 장갑을 만들고 표면에 플라스틱이나 고무 등으로 도포하여 생산	장갑을 공급받아 플라스틱 또는 고무를 도포 침투 시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물로 한정)	피 재질(제43류) -유아용 장갑(제6111호) -편물체가 아닌 것(제6216호) -마사지, 화장용 마찰장갑(제6302호)			키는 공정만 거친 경우 제외
147	6307.10-0000	마루담이포·접시담이포·더스터(duster)와 이와 유사한 청소용 포	렌즈의 먼지나 얼룩을 닦기 위한 방직용 섬유 제품 -"제품" 정의는 제11부 총설(II) "제품으로 된 것(made up article)" 부분 참조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제52류 면사나 제54류 인조 필라멘트사를 직접 직조(weaving)하여 제품을 만들거나, 직조된 직물을 특정 모양으로 재단·봉제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재단·봉제 등 "제품" 공정 필수	직조된 후 가공 등 단순한 경우 제외
148	6309.00-0000	중고 의류	사용한 흔적이 명확한 의류나 의류의 부속품(예: 스카프, 장갑 등), 가정용 실내용품(예: 커튼, 테이블보 등)  <제외대상> -양탄자, 바닥 깔개(제5701~5703호) -매트리스나 누비이불 등(제9404호) -방수포나 텐트 등(제6306호) -석면 재질의 것(제6812호)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국내에서 수집된 것	외국에서 수입한 중고 의류는 제외
149	6909.12-0000	실험실용·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모스 경도가 9 이상인 것)	"모스 경도 9 이상" 정의는 제6909호 소호해설 부분 참조  <제외대상> -그라인딩 휠(제6804호)내화도자제(제6903호) -서멧 제품(제8113호)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제28류 산화알루미늄이나 탄화규소 등의 원료를 배합한 후 성형·소결(sintering)·연마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배합·성형·소결(sintering) 공정 필수	
150	6911.10-2000	자기제의 접시	자기제 그릇임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주요 원재료를 반죽·성형·건조·문양·초벌·유약·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재벌과정을 통해 생산	
151	6913.10-0000	자기제 도자제 장식용 제품	자기제 장식품임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주요 원재료를 반죽·성형·건조·문양·초벌·유약·재벌과정을 통해 생산	
152	7006.00-4000	가공한 유리시트 (액정 디스플레이용)	제 7003 호 ~ 제 7005호의 유리를 가공 처리한 유리 <제외대상> -유리에 다른 재료(목재· 금속 등)가 결합된 제품(예: 사진틀, 문자판) -안전유리(제7007호) -유리제 복층절연유닛(제 7008호) -거울형상의 유리(제7009호) 등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제7003호·제7004호·제7005호의 유리를 주요 원재료로 다음의 가공 중 하나 이상을 거친 경우 1. 평면유리판을 고온 굽힘이나 고온 곡면한 것 2. 가장자리를 가공한 유리[연마한 것·광택을 낸 것·등글게한 것·노치한 것 (notched)·모따기한 것 (chamfered)·사각지게한 것 (bevelled)·프로파일한 것(profiled) 등 3. 천공(穿孔)하거나 홈이 파진 공정 4. 제조 후 표면가공을 한 유리 (예시 : 불투명 처리, 에나멜을 칠한 유리, 무늬·장식·여러 연속도안 장식된 유리)	
153	7113.19-1000	백금으로 만든 신변장식용품	귀금속(금, 은, 백금)으로 만든 신변장식용품 <제외대상> -100년을 초과한 골동품(제9706호)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제7108호의 금 등을 주요 원재료로 용융, 주조 등의 과정을 거쳐 생산 (다이아몬드, 큐빅, 은, 백금 등이 함께 사용 될 수 있음)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제96류(예: 만년필)의 일부분 -모조 신변장식용품(제7117호) -귀금속 함량이 미미한 경우(예: 태두리) -귀금속제 손목시계줄(제9113호)	한-인도네시아 CEPA		
154	7113.19-2000	귀금속제신변장식품(금으로 만든 것)	귀금속(금, 은, 백금)으로 만든 신변장식용품  <제외대상> -100년을 초과한 골동품(제9706호) -제96류(예: 만년필)의 일부분 -모조 신변장식용품(제7117호) -귀금속 함량이 미미한 경우(예: 태두리) -귀금속제 손목시계줄(제9113호)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제7108호의 금 등을 주요 원재료로 용융, 주조 등의 과정을 거쳐 생산(다이아몬드, 큐빅, 은, 백금 등이 함께 사용될 수 있음)	
155	7114.19-1000	귀금속으로 만든 식탁용품(은 또는 귀금속을 입힌 비금속으로 만든 것은 제외)	귀금속으로 만든 식탁용품  <제외대상> -100년을 초과한 골동품(제9706호) -제96류(예: 만년필)의 일부분 -모조 신변장식용품(제7117호) -귀금속 함량이 미미한 경우(예: 태두리) -귀금속제 손목시계줄(제9113호) * 귀금속을 도금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하나, 귀금속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은 제7114.20호에 분류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은 이외의 귀금속을 주요 원재료로 생산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156	7114.19-9000	그 밖의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 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은으로 만든 것, 식탁용의 것 제외)	귀금속으로 만든 기타의 것(예: 종교용품 등)  <제외대상> -100년을 초과한 골동품(제 9706 호) -제96류(예: 만년필)의 일부분 -모조 신변장식 용품(제7117호) -귀금속 함량이 미미한 경우(예: 테두리) -귀금속제 손목 시계줄(제 9113 호) * 귀금속을 도금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하나, 귀금속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은 제 7114.20 호에 분류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은 이외의 귀금속을 주요 원재료로 생산	
157	7202.11-0000	페로망간(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것)	Mn-Fe 합금철로 망간강, 강의 탈산에 사용  <제외대상> -산화몰리브데늄, 칼슘몰리브데이트, 탄화규소(제 2825호, 제2849 호 등) -페로세륨, 발화성 철합금(제 3606호) -유사품명이더라도 기타 철강야금에 탈산제로 사용되지 않는 것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용광로 또는 전기로에서 망간광(제 2602 호)이나 망간청동(제 2603 호)을 주요 원재료로 생산	
158	7202.19-0000	페로망간(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	Mn-Fe 합금철로 망간강, 강의 탈산에 사용  <제외대상> -산화몰리브데늄, 칼슘몰리브데이트, 탄화규소(제 2825호, 제2849 호 등)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용광로 또는 전기로에서 망간광(제 2602 호)이나 망간청동(제 2603 호)을 주요 원재료로 생산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호 등) -페로세륨, 발화성 철합금(제 3606호) -유사품명이더라도 기타 철강 야금에 탈산제로 사용되지 않는 것	한-인도네시아 CEPA		
159	7202.30-0000	페로실리코망간 (ferro-silico-manganese)	Mn-Fe 합금철로 망간강, 강의 탈산에 사용 <제외대상> -산화몰리브데늄, 칼슘몰리브데이트, 탄화규소(제 2825호, 제2849호 등) -페로세륨, 발화성 철합금(제 3606호) -유사품명이더라도 기타 철강 야금에 탈산제로 사용되지 않는 것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용광로 또는 전기로에서 망간광(제 2602호)이나 망간청동(제 2603호)을 주요 원재료로 생산	
160	7204.21-0000	스테인리스강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scrap ingot)	철강제조나 고철제품 해제작업과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스테인리스강의 부스러기나 이를 용융한 잉곳  <제외대상> -원료가 아닌 보수하면 재사용이 가능한 형태(예: 기둥, 선로 등) -철강 제조시 생기는 슬래그, 드로스, 스케일링과 웨이스트(제 2619호) -선철, 스피그라이즌 조각(제 7201호) -방사성 물질이 함유된 철강 웨이스트(제 2844호)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국내 제조과정 발생한 부스러기를 수집되었거나 수집한 폐기물 등을 분해하여 리사이클링 기계 등을 이용해 스크랩 등을 선별	외국에 수입한 스크랩·부스러기는 제외
161	7208.2	철이나 비합	두 개의 회전하	한-아세안 FTA,	철이나 비합금강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5-1000	금강의 평판 압연제품 [열간(熱間) 압연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 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폭이 600 밀리미터 이상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 인장강 도가 490메가 파스칼 이상 인 것]	는 롤 사이에 철 이나 비합금강의 소재를 열간 압 연하여 만든 판 재 <제외대상> -금속으로 표면 을 도포, 도금한 것 -플라스틱 수지 (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귀금속으로 피 복된 것(제71류) -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외 가 공한 것 -평판형상 외 제 품의 특성을 가 진 것 -각이 있는 립드 (ribbed) 제품(제 7216호) -익스팬디드 메 탈(제7314호) -반가공 된 비금 속 블랭크(제82 류) *압연 과정에서 생기는 무늬나 금속의 성질을 향상하기 위한 표면처리 등은 허용	한-인도 CEPA,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의 일차제품(제 7206호)·반제품 (제7207호) 또는 웨이스트와 스크 랩을 사용하여 열간(熱間)압연하 여 생산	
162	7208.2 5-9000	철이나 비합 금강의 평판 압연제품 [열간(熱間) 압연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 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폭이 600 밀리미터 이상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 인장강 도가 490메가 파스칼 이상 인 것 제외]	두 개의 회전하 는 롤 사이에 철 이나 비합금강의 소재를 열간압연 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금속으로 표면 을 도포, 도금한 것 -플라스틱 수지 (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귀금속으로 피 복된 것(제71류) -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외 가 공한 것 -평판형상 외 제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철이나 비합금강 의 일차제품(제 7206호)·반제품 (제7207호) 또는 웨이스트와 스크 랩을 사용하여 열간(熱間)압연하 여 생산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p>품의 특성을 가진 것</p> <p>-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 7216호)</p> <p>-익스팬디드 메탈(제7314호)</p> <p>-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p> <p>*압연 과정에서 생기는 무늬나 금속의 성질을 향상하기 위한 표면처리 등은 허용</p>			
163	7208.26-1000	<p>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 [열간(熱間) 압연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p>	<p>두 개의 회전하는 롤 사이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소재를 열간 압연하여 만든 판재</p> <p>&lt;제외대상&gt;</p> <p>-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p> <p>-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p> <p>-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p> <p>-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외 가공한 것</p> <p>-평판형상 외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p> <p>-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 7216호)</p> <p>-익스팬디드 메탈(제7314호)</p> <p>-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p> <p>*압연 과정에서 생기는 무늬나 금속의 성질을 향상하기 위한 표면처리 등은 허용</p>	<p>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p>	<p>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 7206호)·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호)·반제품(제7207호) 또는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사용하여 열간(熱間)압연하여 생산</p>	
164	7208.2	철이나 비합	두 개의 회전하	한-아세안 FTA,	철이나 비합금강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6-9000	금강의 평판 압연제품 [열간(熱間) 압연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 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폭이 600 밀리미터 이상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 4.75밀리 미터 미만인 것(인장강도가 490메가파 스칼 이상인 것은 제외)]	는 롤 사이에 철 이나 비합금강의 소재를 열간압연 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 -플라스틱 수지 (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귀금속으로 피 복된 것(제71류) -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외 가 공한 것 -평판형상 외 제 품의 특성을 가 진 것 -각이 있는 립드 (ribbed) 제품(제 7216호) -익스팬디드 메 탈(제7314호) -반가공된 비금 속 블랭크(제82 류) *압연 과정에서 생기는 무늬나 금속의 성질을 향상하기 위한 표면처리 등은 허용	한-인도 CEPA,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의 일차제품(제 7206호)·반제품 (제7207호) 또는 웨이스트와 스크 랩을 사용하여 열간(熱間)압연하 여 생산	
165	7208.2 7-1000	철이나 비합 금강의 평판 압연제품 [열간(熱間) 압연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 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폭이 600 밀리미터 이상 두께가 3 밀리미터 미 만인 것(인장 강도가 490메 가파스칼 이 상인 것)]	두 개의 회전하 는 롤 사이에 철 이나 비합금강의 소재를 열간 압 연하여 만든 판 재  <제외대상>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 -플라스틱 수지 (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귀금속으로 피 복된 것(제71류) -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외 가 공한 것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철이나 비합금강 의 일차제품(제 7206호)·반제품 (제7207호) 또는 웨이스트와 스크 랩을 사용하여 열간(熱間)압연하 여 생산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p>-평판형상 外 제품 의 특성을 가진 것</p> <p>-각이 있는 립드 (ribbed) 제품(제 7216호)</p> <p>-익스팬디드 메 탈(제7314호)</p> <p>-반가공된 비금 속 블랭크(제82 류)</p> <p>*압연 과정에서 생기는 무늬나 금속의 성질을 향상하기 위한 표면처리 등은 허용</p>			
166	7208.2 7-9000	<p>철이나 비합 금강의 평판 압연제품 [열간(熱間) 압연한 것으 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 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 다. 폭이 600 밀리미터 이 상 두께가 3 밀리미터 미 만인 것(인장 강도가490메 가파스칼 이 상인 것은 제 외)]</p>	<p>두 개의 회전하는 롤 사이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소재 를 열간(熱間)압 연하여 만든 판 재</p> <p>&lt;제외대상&gt;</p> <p>-금속으로 표면 을 도포, 도금한 것</p> <p>-플라스틱 수지 (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p> <p>-귀금속으로 피 복된 것(제71류)</p> <p>-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外 가 공한 것</p> <p>-평판형상 外 제 품의 특성을 가 진 것</p> <p>-각이 있는 립드 (ribbed) 제품(제 7216호)</p> <p>-익스팬디드 메 탈(제7314호)</p> <p>-반가공 된 비금 속 블랭크(제82 류)</p> <p>*압연 과정에서 생기는 무늬나 금속의 성질을 향상하기 위한 표면처리 등은</p>	<p>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p>	<p>철이나 비합금강 의 일차제품(제 7206호)·반제품 (제7207호) 또는 웨이스트와 스크 랩을 사용하여 열간(熱間)압연하 여 생산</p>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허용			
167	7208.3 6-1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 [열간(熱間) 압연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 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은 제외)]	두 개의 회전하는 롤 사이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소재를 열간 압연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 -플라스틱 수지 (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 -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외 가공한 것 -평판형상 외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 -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 -익스팬디드 메탈(제7314호)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 * 압연 과정에서 생기는 무늬나 금속의 성질을 향상하기 위한 표면처리 등은 허용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호)·반제품(제7207호) 또는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사용하여 열간(熱間) 압연하여 생산	
168	7208.3 6-9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 [열간(熱間) 압연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 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두 개의 회전하는 롤 사이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소재를 열간 압연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 -플라스틱 수지 (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 -연마 같은 단순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호)·반제품(제7207호) 또는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사용하여 열간(熱間) 압연하여 생산	

연 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은 제외)]	표면처리 外 가 공한 것 -평판형상 外 제 품의 특성을 가 진 것 -각이 있는 립드 (ribbed) 제품(제 7216호) -익스팬디드 메 탈(제7314호) -반가공된 비금 속 블랭크(제82 류) *압연 과정에서 생기는 무늬나 금속의 성질을 향상하기 위한 표면처리 등은 허용			
169	7208.3 7-1000	철이나 비합 금강의 평판 압연제품 [열간(熱間) 압연한 것으 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 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 다. 폭이 600 밀리미터 이 상,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 10밀리 미터 이하인 것(인장강도 가 490메가파 스칼 이상인 것)]	두 개의 회전하 는 롤 사이에 철 이나 비합금강의 소재를 열간 압 연하여 만든 판 재  <제외대상> -금속으로 표면 을 도포, 도금한 것 -플라스틱 수지 (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귀금속으로 피 복된 것(제71류) -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外 가 공한 것 -평판형상 外 제 품의 특성을 가 진 것 -각이 있는 립드 (ribbed) 제품(제 7216호) -익스팬디드 메 탈(제7314호) -반가공된 비금 속 블랭크(제82 류) *압연 과정에서 생기는 무늬나 금속의 성질을 향상하기 위한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철이나 비합금강 의 일차제품(제 7206호)·반제품 (제7207호) 또는 웨이스트와 스크 랩을 사용하여 열간(熱間)압연하 여 생산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표면처리 등은 허용			
170	7208.37-9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 [열간(熱間) 압연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이하인 것(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은 제외)]	두 개의 회전하는 롤 사이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소재를 열간 압연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 -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 -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외 가공한 것 -평판형상 외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 -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 -익스팬디드 메탈(제7314호)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 * 압연 과정에서 생기는 무늬나 금속의 성질을 향상하기 위한 표면처리 등은 허용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호)·반제품(제7207호) 또는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사용하여 열간(熱間)압연하여 생산	
171	7208.38-1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 [열간(熱間) 압연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두 개의 회전하는 롤 사이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소재를 열간(熱間)압연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 -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귀금속으로 피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호)·반제품(제7207호) 또는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사용하여 열간(熱間)압연하여 생산	

연 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것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p>복된 것(제71류) -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외 가공한 것 -평판형상 외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 -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 -익스팬디드 메탈(제7314호)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 *압연 과정에서 생기는 무늬나 금속의 성질을 향상하기 위한 표면처리 등은 허용</p>			
172	7208.38-9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 [열간(熱間) 압연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은 제외)]	<p>두 개의 회전하는 롤 사이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소재를 열간압연하여 만든 판재</p> <p>&lt;제외대상&gt;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 -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 -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외 가공한 것 -평판형상 외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 -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 -익스팬디드 메탈(제7314호)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 *압연 과정에서 생기는 무늬나 금속의 성질을</p>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호)·반제품(제7207호) 또는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사용하여 열간(熱間)압연하여 생산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향상하기 위한 표면처리 등은 허용			
173	7208.3 9-1000	철이나 비합 금강의 평판 압연제품 [열간(熱間) 압연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 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폭이 600 밀리미터 이 상 두께가 3 밀리미터 미 만인 것(인장 강도가 490메 가파스칼 이 상인 것)]	두 개의 회전하 는 롤 사이에 철 이나 비합금강의 소재를 열간압연 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금속으로 표면 을 도포, 도금한 것 -플라스틱 수지 (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귀금속으로 피 복된 것(제71류) -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외 가 공한 것 -평판형상 외 제 품의 특성을 가 진 것 -각이 있는 릿드 (ribbed) 제품(제 7216호) -익스팬디드 메 탈(제7314호) -반가공된 비금 속 블랭크(제82 류) * 압연 과정에서 생기는 무늬나 금속의 성질을 향상하기 위한 표면처리 등은 허용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철이나 비합금강 의 일차제품(제 7206호)·반제품 (제7207호) 또는 웨이스트와 스크 랩을 사용하여 열간(熱間)압연하 여 생산	
174	7208.3 9-9000	철이나 비합 금강의 평판 압연제품 [열간(熱間) 압연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 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폭이 600 밀리미터 이 상 두께가 3 밀리미터 미 만인 것(인장 강도가 490메	두 개의 회전하 는 롤 사이에 철 이나 비합금강의 소재를 열간압연 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금속으로 표면 을 도포, 도금한 것 -플라스틱 수지 (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귀금속으로 피 복된 것(제71류)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철이나 비합금강 의 일차제품(제 7206호)·반제품 (제7207호) 또는 웨이스트와 스크 랩을 사용하여 열간(熱間)압연하 여 생산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가파스칼 이상인 것은 제외]	-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外 가공한 것 -평판형상 外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 -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 -익스팬디드 메탈(제7314호)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 *압연 과정에서 생기는 무늬나 금속의 성질을 향상하기 위한 표면처리 등은 허용			
175	7208.51-1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 [열간(熱間) 압연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 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열간 압연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 -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 -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外 가공한 것 -평판형상 外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 -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 -익스팬디드 메탈(제7314호)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 *압연 과정에서 생기는 무늬나 금속의 성질을 향상하기 위한 표면처리 등은 허용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호)·반제품(제7207호) 또는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사용하여 열간(熱間)압연하여 생산	
176	7208.5	철이나 비합	두 개의 회전하	한-아세안 FTA,	철이나 비합금강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1-9000	금강의 평판 압연제품 [열간(熱間) 압연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 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폭이 600 밀리미터 이상 두께가 1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 칼 이상인 것은 제외)]	는 롤 사이에 철 이나 비합금강의 소재를 열간압연 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 -플라스틱 수지 (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귀금속으로 피 복된 것(제71류) -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외 가 공한 것 -평판형상 외 제 품의 특성을 가 진 것 -각이 있는 립드 (ribbed) 제품(제 7216호) -익스팬디드 메 탈(제7314호) -반가공된 비금 속 블랭크(제82 류) *압연 과정에서 생기는 무늬나 금속의 성질을 향상하기 위한 표면처리 등은 허용	한-인도 CEPA,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의 일차제품(제 7206호)·반제품 (제7207호) 또는 웨이스트와 스크 랩을 사용하여 열간(熱間)압연하 여 생산	
177	7208.5 2-1000	철이나 비합 금강의 평판 압연제품 [열간(熱間) 압연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 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폭이 600 밀리미터 이상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 10밀리 미터 이하인 것(인장강도가 490메가파 스칼 이상인 것)]	두 개의 회전하 는 롤 사이에 철 이나 비합금강의 소재를 열간압연 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 -플라스틱 수지 (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귀금속으로 피 복된 것(제71류) -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외 가 공한 것 -평판형상 외 제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철이나 비합금강 의 일차제품(제 7206호)·반제품 (제7207호) 또는 웨이스트와 스크 랩을 사용하여 열간(熱間)압연하 여 생산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p>품의 특성을 가진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li> <li>-익스팬디드 메탈(제7314호)</li> <li>-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li> </ul> <p>* 압연 과정에서 생기는 무늬나 금속의 성질을 향상하기 위한 표면처리 등은 허용</p>			
178	7208.52-9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 [열간(熱間) 압연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이하인 것(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은 제외)]	<p>두 개의 회전하는 롤 사이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소재를 열간압연하여 만든 판재</p> <p>&lt;제외대상&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li> <li>-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li> <li>-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li> <li>-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외 가공한 것</li> <li>-평판형상 외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li> <li>-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li> <li>-익스팬디드 메탈(제7314호)</li> <li>-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li> </ul> <p>* 압연 과정에서 생기는 무늬나 금속의 성질을 향상하기 위한 표면처리 등은 허용</p>	<p>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p>	<p>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호)·반제품(제7207호) 또는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사용하여 열간(熱間)압연하여 생산</p>	
179	7208.54-1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	<p>두 개의 회전하는 롤 사이에 철</p>	<p>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p>	<p>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p>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압연제품 [열간(熱間) 압연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 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폭이 600 밀리미터 이상 두께가 3 밀리미터 미만인 것(인장 강도가 490메 가파스칼 이상인 것)]	이나 비합금강의 소재를 열간압연 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 -플라스틱 수지 (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귀금속으로 피 복된 것(제71류) -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외 가 공한 것 -평판형상 외 제 품의 특성을 가 진 것 -각이 있는 립드 (ribbed) 제품(제 7216호) -익스팬디드 메 탈(제7314호) -반가공된 비금 속 블랭크(제82 류) *압연 과정에서 생기는 무늬나 금속의 성질을 향상하기 위한 표면처리 등은 허용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7206호)·반제품 (제7207호) 또는 웨이스트와 스크 랩을 사용하여 열간(熱間)압연하 여 생산	
180	7208.5 4-9000	철이나 비합 금강의 평판 압연제품 [열간(熱間) 압연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 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폭이 600 밀리미터 이상 두께가 3 밀리미터 미만인 것(인장 강도가 490메 가파스칼 이상인 것은 제 외)]	두 개의 회전하 는 롤 사이에 철 이나 비합금강의 소재를 열간압연 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 -플라스틱 수지 (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귀금속으로 피 복된 것(제71류) -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외 가 공한 것 -평판형상 외 제 품의 특성을 가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철이나 비합금강 의 일차제품(제 7206호)·반제품 (제7207호) 또는 웨이스트와 스크 랩을 사용하여 열간(熱間)압연하 여 생산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진 것 -각이 있는 립드 (ribbed) 제품(제 7216호) -익스팬디드 메탈(제7314호)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 *압연 과정에서 생기는 무늬나 금속의 성질을 향상하기 위한 표면처리 등은 허용			
181	7209.16-1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 두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고 3밀리미터 미만인 것(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두 개의 회전하는 롤 사이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소재를 냉간압연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 -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 -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외 가공한 것 -평판형상 외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 -각이 있는 립드 (ribbed) 제품(제 7216호) -익스팬디드 메탈(제7314호)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 *압연 과정에서 생기는 무늬나 금속의 성질을 향상하기 위한 표면처리 등은 허용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 7206호)·반제품(제 7207호)·판(제 7208호) 등을 주요 원재료로 냉간압연(냉간환원)을 거쳐 생산	
182	7209.16-9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	두 개의 회전하는 롤 사이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이스라엘 FT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 7206호)·반제품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 두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고 3밀리미터 미만인 것(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은 제외)]	<p>소재를 냉간압연하여 만든 판재</p> <p>&lt;제외대상&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li> <li>-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li> <li>-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li> <li>-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외 가공한 것</li> <li>-평판형상 외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li> <li>-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li> <li>-익스팬디드 메탈(제7314호)</li> <li>-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li> </ul> <p>* 압연 과정에서 생기는 무늬나 금속의 성질을 향상하기 위한 표면처리 등은 허용</p>	한-캄보디아 FTA	(제7207호)·판(제7208호) 등을 주요 원재료로 냉간압연(냉간환원)을 거쳐 생산	
183	7209.17-1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 1밀리미터 이하인 것(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p>두 개의 회전하는 롤 사이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소재를 냉간압연하여 만든 판재</p> <p>&lt;제외대상&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li> <li>-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li> <li>-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li> <li>-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외 가공한 것</li> <li>-평판형상 외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li> </ul>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호)·반제품(제7207호)·판(제7208호) 등을 주요 원재료로 냉간압연(냉간환원)을 거쳐 생산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이 있는 립드 (ribbed) 제품 (제7216호)</li> <li>-익스팬디드 메탈(제7314호)</li> <li>-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li> <li>* 압연 과정에서 생기는 무늬나 금속의 성질을 향상하기 위한 표면처리 등은 허용</li> </ul>			
184	7209.17-9000	<p>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 1밀리미터 이하인 것(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은 제외)]</p>	<p>두 개의 회전하는 롤 사이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소재를 냉간압연하여 만든 판재</p> <p>&lt;제외대상&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li> <li>-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li> <li>-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li> <li>-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외 가공한 것</li> <li>-평판형상 외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li> <li>-각이 있는 립드 (ribbed) 제품(제7216호)</li> <li>-익스팬디드 메탈(제7314호)</li> <li>-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li> <li>* 압연 과정에서 생기는 무늬나 금속의 성질을 향상하기 위한 표면처리 등은 허용</li> </ul>	<p>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p>	<p>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호)·반제품(제7207호)·판(제7208호) 등을 주요 원재료로 냉간압연(냉간환원)을 거쳐 생산</p>	
185	7209.18-1000	<p>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 [냉간압연(냉</p>	<p>두 개의 회전하는 롤 사이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소재를 냉간압연</p>	<p>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이스라엘 FTA,</p>	<p>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호)·반제품(제7207호)·판(제</p>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간환원)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 두께가 0.5밀리미터 미만인 것(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p>하여 만든 판재</p> <p>&lt;제외대상&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li> <li>-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li> <li>-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li> <li>-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외 가공한 것</li> <li>-평판형상 외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li> <li>-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li> <li>-익스팬디드 메탈(제7314호)</li> <li>-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li> </ul> <p>* 압연 과정에서 생기는 무늬나 금속의 성질을 향상하기 위한 표면처리 등은 허용</p>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7208호) 등을 주요 원재료로 냉간압연(냉간환원)을 거쳐 생산	
186	7209.18-9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 두께가 0.5밀리미터 미만인 것(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은 제외)]	<p>두 개의 회전하는 롤 사이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소재를 냉간압연하여 만든 판재</p> <p>&lt;제외대상&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li> <li>-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li> <li>-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li> <li>-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외 가공한 것</li> <li>-평판형상 외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li> <li>-각이 있는 립드</li> </ul>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호)·반제품(제7207호)·판(제7208호) 등을 주요 원재료로 냉간압연(냉간환원)을 거쳐 생산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ribbed) 제품(제7216호) -익스팬디드 메탈(제7314호)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 *압연 과정에서 생기는 무늬나 금속의 성질을 향상하기 위한 표면처리 등은 허용			
187	7209.27-1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 1밀리미터 이하인 것(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두 개의 회전하는 롤 사이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소재를 냉간압연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 -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 -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외 가공한 것 -평판형상 외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 -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 -익스팬디드 메탈(제7314호)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 *압연 과정에서 생기는 무늬나 금속의 성질을 향상하기 위한 표면처리 등은 허용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호)·반제품(제7207호)·판(제7208호) 등을 주요 원재료로 냉간압연(냉간환원)을 거쳐 생산	
188	7209.27-9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두 개의 회전하는 롤 사이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소재를 냉간압연하여 만든 판재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호)·반제품(제7207호)·판(제7208호) 등을 주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 1밀리미터 이하인 것(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은 제외)	<p>&lt;제외대상&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li> <li>-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li> <li>-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li> <li>-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외 가공한 것</li> <li>-평판형상 외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li> <li>-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li> <li>-익스팬디드 메탈(제7314호)</li> <li>-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li> </ul> <p>* 압연 과정에서 생기는 무늬나 금속의 성질을 향상하기 위한 표면처리 등은 허용</p>		요 원재료로 냉간압연(냉간환원)을 거쳐 생산	
189	7210.12-0000	주석을 도금·도포한 평판 압연제품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으로 한정하고, 두께가 0.5밀리미터 미만인 것]	<p>평판압연 제품에 주석피막을 입힌 것</p> <p>&lt;제외대상&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순한 화학적 표면처리나 크론산 염처리를 한 것</li> <li>-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li> <li>-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li> <li>-평판형상 외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li> <li>-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li> <li>-익스팬디드 메탈(제7314호)</li> <li>-반가공된 비금</li> </ul>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호), 반제품(제7207호), 웨이스트나 스크랩(제7204호) 등을 통해 평판압연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용융된 주석도금 욕조에 담가 피막을 입혀 생산하거나, 평판압연제품(제7208호·제7209호)의 표면을 세척, 소둔 후 용융된 주석도금 욕조에 담가 피막을 입히거나 기타 방법으로 표면을 도금, 클래딩 처리하여 생산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속 블랭크(제82류)			
190	7210.49-1010	아연을 도금·도포한 평판 압연제품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으로 한정하고,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평판 압연 제품에 아연 피막을 입힌 것  <제외대상> -단순한 화학적 표면처리나 크론산 염처리를 한 것 -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 -평판형상 외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 -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 -익스팬디드 메탈(제7314호)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베트남 FTA,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호), 반제품(7207호), 웨이스트나 스크랩(제7204호) 등을 통해 평판 압연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용융된 아연 도금 욕조에 담가 피막을 입혀 생산하거나, 또는 평판 압연 제품(제7208호·제7209호)을 표면세척, 소둔 후 용융된 아연 도금 욕조 등에 담가 피막을 입히거나 기타 방법으로 표면을 도금, 클래딩 처리하여 생산	
191	7210.61-0000	알루미늄-아연 합금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평판 압연제품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으로 한정하고,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평판 압연 제품에 알루미늄·아연 피막을 입힌 것  <제외대상> -단순한 화학적 표면처리나 크론산 염처리를 한 것 -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 -평판형상 외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 -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 -익스팬디드 메탈(제7314호)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베트남 FTA,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호), 반제품(7207호), 웨이스트나 스크랩(제7204호) 등을 통해 평판 압연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용융된 알루미늄 도금 욕조에 담가 피막을 입혀 생산하거나, 또는 평판 압연 제품(제7208호·제7209호)을 표면세척, 소둔 후 용융된 알루미늄 도금 욕조 등에 담가 피막을 입히거나 기타 방법으로 표면을 도금, 클래딩 처리하여 생산	
192	7212.4	두께가 4.75	도장 처리된 철	한-아세안 FTA,	제72류 철이나	단순히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0-2000	밀리미터 미만인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으로 한 정](페인팅한 것·바니시한 것·플라스틱을 도포한 것)	이나 비합금강 평판압연제품(폭 600mm 미만, 두께 4.75mm 미만)"강(steel)" 정의는 제72류 주 제1호 (라)목 참조 클래딩 (피복 처리)" 정의는 제72류 총설 참조 -"평판압연제품" 정의는 제72류 주1 (차)목 참조	한-인도 CEP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비합금강의 반제품을 압연(rolling)하거나, 또는 평판압연제품(제7212호 제외)을 일정 폭으로 절단한 후 열처리·도금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압연 등의 성형공정 또는 기계가공·도금(coating) 공정 필수	페인팅 도포 공정만 거친 경우 적용 제외
193	7216.33-4000	H형강 (높이가300밀리미터 이상 600밀리미터 이하인 것)	횡단면이 균일한 H형상의 긴 강철 <제외대상> -철강 구조물의 구성부품(제7308호) -철도 레일용의 받침목이나 좌철 등(제7302호)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철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정련, 주조, 압연 공정을 거쳐 생산	중간 제품 (Beam Blank) 을 공급 받아 압연 공정을 거쳐 생산된 물품은 적용 제외
194	7217.10-0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선(線)[도금하거나 도포하지 않은 것(연마한 것인 지에 상관없다)]	"강(steel)" 정의는 제72류 주 제1호 (라)목 참조"선" 정의는 제72류 주1 (하)목 참조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제72류 철이나 비합금강의 봉재(wire rod) 등을 다이에 넣고 인발한 후 코팅 등 추가 공정을 거쳐 생산 인발(drawing) 또는 신선(wire drawing) 공정 필수	
195	7223.00-0000	스테인리스강의 선(線)	"스테인리스강" 및 "선(線)"의 정의는 제72류 주1 (마)목 및 (하)목 참조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제72류 스테인리스강의 봉재(wire rod) 등을 다이에 넣고 인발한 후 절단·코팅 등의 마무리 공정을 거쳐 생산 인발(drawing) 또는 신선(wire drawing) 공정은 필수	
196	7226.92-0000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그 밖의	상온(재결정 온도 이하)에서 압연방법으로 생산된 평판(시트, 판, 스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중 FTA,	제7205호~7208호 또는 제7214호, 제7218호, 제7224호 등 반제품이	제7225호를 공급받아 단순 표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평판압연제품 (폭인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	트립 등) 모양의 철강제품	한-베트남 FTA,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나 일차제품을 원료를 압연하여 생산	면 처리 적용 제외
197	7227.90-9090	그 밖의 합금강의 봉(고속도강, 실리코망간강, 내열강, 봉소의 함유량이 100분의 0.0008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으로 한정한다]	불규칙하게 감아 놓은 코일 형상의 열간압연 합금강의 봉*  *제72류 주1(카) 규정 참조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제7205호~7208호 또는 제7214호, 제7218호, 제7224호~7226호 등의 반제품이나 일차제품 형상을 원료로 제강 또는 압연공정 등을 통해 생산	
198	7228.50-0000	그 밖의 합금강의 봉[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	기타의 합금강으로 된 기타의 봉(bar and rod) -"기타의 합금강" 정의는 제72류 주1 (바)목 참조 -"그 밖의 봉" 정의는 제72류 주1 (타)목 참조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중 FTA,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제72류 철이나 비합금강의 반제품을 압출(extrusion) 등의 성형공정을 거쳐 생산 -압출(extrusion) 성형공정 필수	
199	7305.11-1000	철강으로 만든 횡단면이 원형인 오일이나 가스 배관용 파이프 라인[세로 방향으로 서브머지드 아크(submerged arc) 용접하였고 바깥지름이 406.4밀리미터 초과 1,422.4밀리미터 이하인 것]	서브머지드 아크(submerged arc) 방법으로 용접한 오일이나 가스 수송용 배관 -"관" 정의는 제73류 총설(1) 참조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제72류 철이나 비합금강의 반제품을 압출(extrusion)·주조(casting)의 방법으로 성형하거나, 평판압연 제품을 프레스 등으로 성형한 후 용접(welding)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 -성형(forging) 및 용접(welding) 공정은 필수	
200	7306.40-1000	바깥지름이 114.3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그 밖의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	"관과 프로파일" 정의는 제73류 총설 (1) 및 (2) 참조 -"스테인리스강" 정의는 제72류 주1 (마)목 참조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제72류 스테인리스강의 반제품을 압출(extrusion)·주조(casting)의 방법으로 성형하거나, 평판압연 제품을 프레스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profile)(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			등으로 성형한 후 용접(welding)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 -성형(forging) 및 용접(welding) 공정은 필수	
201	7306.40-2000	바깥지름이 114.3밀리미터 이하인 그 밖의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	"관과 프로파일" 정의는 제73류 총설(1) 및 (2) 참조 -"스테인리스강" 정의는 제72류 주1(마)목 참조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제72류 스테인리스강의 반제품을 압출(extrusion)·주조(casting)의 방법으로 성형하거나, 평판압연 제품을 프레스 등으로 성형한 후 용접(welding)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 -성형(forging) 및 용접(welding) 공정은 필수	
202	7306.50-0000	그 밖의 합금강으로 만든 관 및 중공 프로파일(기타의 것)[(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그 밖의 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기타의 합금강*으로 용접하여 만든 봉이나 관 *제15부 주5 및 제72류 주1(바) 규정 참조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제72류를 주요 원재료로 성형공정, 용접공정을 거쳐 생산  제7205~7208호 또는 제7214호, 제7218호, 제7224호~7226호 등의 반제품이나 일차 제품 형상을 원료로 제강 또는 압연공정 등을 통해 생산	
203	7307.91-0000	그 밖의 합금강으로 만든 플랜지(flange)	관의 이음새 부분에 사용되는 철강제 플랜지  <제외대상> -제7308호, 제8481호, 제8547호, 제8714호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제72류 철강을 주요 원재료로 플랜지 몸체를 단조공정 또는 절단공정을 통해 플랜지 몸체를 만드는 공정을 거쳐 생산	플랜지 반제품을 공급받아 드릴링, 마킹 공정 또는 간단한 공정을 거쳐 생산하는 경우 적용 제외
204	7307.93-0000	철강제품(바트(butt)용 접용연결구)	관 등을 연결하기 위한 바트 용접용 철강제품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제72류 철강을 원재료로 성형 또는 단조 공정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p>&lt;제외대상&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을 벽에 지지하거나 고정하기 위한 행거, 피스, 조임용 밴드 등(제7325호 등)</li> <li>-철강제 구조물로 특별히 설계된 것</li> <li>-탭, 콕, 밸브 등을 결합된 것(제8481호)</li> <li>-자전거나 모터사이클의 프레임 조립용의 것(제8714호)</li> <li>-온도조절식 익스팬션 조인트(제8307호)</li> </ul>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을 거쳐 생산	
205	7309.00-0000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탱크·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 (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는 상관없음)	<p>철강재질의 탱크 (용도불분)</p> <p>&lt;제외대상&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송수단에 탑재되도록 특별히 설계된 것(제8609호)</li> <li>-가열이나 냉각용의 통(제8480호)</li> <li>-철도 레일용의 받침목이나 좌철 등(제7302호)</li> </ul>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설계, 원재료 가공, 원재료 결합(용접) 공정을 거쳐 생산	
206	7310.10-0000	용적이 50리터 이상 300리터 이하인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탱크·통·드럼·캔·상자와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장치를	<p>운반이나 포장 목적의 철강제용기(50 l ~300 l)</p> <p>&lt;제외대상&gt;</p> <p>컨테이너(제8609호) 및 제4202호, 제9617호, 제7323호, 제7325호, 제7326호, 제8303호</p>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제72류 철강을 원재료로 주조 또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생산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 없다)				
207	7312.10-2099	철강(스테인리스강 제외)으로 만든 로프와 케이블(전기 절연한 것은 제외)	강선을 여러 겹 합쳐 꼬아서 강도를 높인 로프와 케이블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제72류 철이나 비합금강의 반제품을 직접 인발(drawing)하거나, 제7217호 선(wire)을 합사(twist)·연선(wire stranding)한 후 코팅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 -합사(twist)·연선(wire stranding)공정은 필수	이미 완성된 철제 연선이나 케이블에 코팅, 착색 등 단순 공정만 거친 경우 적용 제외
208	7318.15-1000	머신스크루(screw)	나선 가공된 머신스크루(machine screws)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제72류의 철이나 비합금강의 반제품으로 주조(casting)나 단조(forging)의 방법으로 성형한 후 절단·밀링 등의 기계가공을 거쳐 생산 단조 등의 성형 공정 및 나선(threaded) 공정 필수	
209	7318.15-2000	볼트(bolt)	철강제 볼트 <제외대상> -스크루 네일(제7317호) -나사식의 캡, 마개(제8309호) -피아노 등 악기에 사용되는 부분품(제9209호)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인도네시아 CEPA	단조한 봉(제7214호), 철이나 비합금강의 선(線)(제7217호), 기타 합금선(제7229호) 등의 제72류 해당 품목을 주요 원재료로 단조, 전조 공정을 거쳐 생산	볼트 반제품 및 볼랭크를 공급받아 전조 공정을 통해 생산된 물품은 적용 제외
210	7318.15-3000	볼트(bolt)·너트(nut)(세트로 된 것)	<제외대상> -스크루 네일(제7317호) -나사식의 캡, 마개(제8309호) -피아노 등 악기에 사용되는 부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인도네시아 CEPA	단조한 봉(제7214호), 철이나 비합금강의 선(線)(제7217호), 기타 합금선(제7229호) 등의 제72류 해당 품목	볼트·너트 반제품 및 볼랭크를 공급받아 전조 공정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분품(제9209호)		을 주요 원재료로 단조, 전조 공정을 거쳐 생산	을 통해 생산된 원산품은 지리적 증명 제외
211	7318.16-0000	너트(nut)	철강제 너트 <제외대상> -스크루 네일(제7317호) -나사식의 캡, 마개(제8309호) -피아노 등 악기에 사용되는 부분품(제9209호) -제9021호의 것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단조한 봉(제7214호), 철이나 비합금강의 선(線)(제7217호), 기타 합금선(제7229호) 등의 제72류 해당 품목을 주요 원재료로 단조, 전조 공정을 거쳐 생산	너트 반제품 및 크랭크를 받아 전조 공정을 거쳐 생산된 제품 제외
212	7323.93-0000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기타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품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주방용 저장 깡통 -"스테인리스강" 정의는 제72류 주1(마) 참조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213	7326.90-9000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기타의 철강제품 <제외대상> -철강제 주물제품(제7325호) -철강제 탱크(제7309호, 제7310호) -피아노 등 악기에 사용되는 부분품(제9209호)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제72류 및 제73류(제7326호 제외)를 주요 원재료로 단조 또는 편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 등을 거쳐 생산	
214	7408.11-0000	정제한 구리로 만든 선(횡단면의 최대지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정제한 구리" 정의는 제74류 주1(가) 참조"선(wire)" 정의는 제74류 주1(바) 참조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제74류 정제한 구리의 봉재(wire rod) 등을 다이에 넣고 인발한 후 절단·도금 등의 추가 공정을 거쳐 생산 인발(drawing) 공정 필수	제7407호의 것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적용 제외
215	7409.11-9000	정제한 구리로 만든 구리의 판·시트(sheet)·스트립[코일 모양	정제한 구리*로 만든 시트나 스트립 등을 코일 모양으로 감아놓은 것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제7402호 구리 또는 제7403호의 구리를 주요 원재료로 냉간 또는 열간 압연하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으로 두께가 0.1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반도체 제조용 제외)]	*제74류 주1호 (가) 참조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여 생산	
216	7409.19-9000	정제한 구리로 만든 코일 모양이 아닌 판·시트(sheet)·스트립 [두께가 0.1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반도체 제조용 제외)]	정제한 구리*로 만든 코일모양이 아닌 판·시트나 스트립  *제74류 주1호 (가) 참조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제7402호 구리 또는 제7403호의 구리를 주요 원재료로 냉간 또는 열간 압연하여 생산	
217	7409.21-9000	구리-아연 합금(황동)으로 만든 판·시트(sheet)·스트립[코일 모양으로 두께가 0.1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반도체 제조용은 제외한다]	구리-아연 합금*으로 만든 시트나 스트립 등을 코일 모양으로 감아 놓은 것  *제74류 소호주1 (가) 참조  <제외대상> 두께가 0.15mm 이하인 것(제7410호), 전기절연한 것(제8544호)등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제7403호의 구리아연 합금을 주요 원재료로 냉간 또는 열간 압연하여 생산	
218	7409.29-9000	구리-아연 합금(황동)으로 만든 코일 모양이 아닌 판·시트(sheet)·스트립 [두께가 0.1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반도체 제조용은 제외]	구리-아연 합금*으로 만든 시트나 스트립 등을 코일 모양으로 감아 놓은 것  *제74류 소호주1 (가) 참조  <제외대상> 두께가 0.15mm 이하인 것(제7410호), 전기절연한 것(제8544호)등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제7403호의 구리아연 합금을 주요 원재료로 냉간 또는 열간 압연하여 생산	
219	7410.11-0000	정제한 구리의 박(뒷면을 보강하지 않은 것)	정제한 구리*로 만든 박(뒷면을 보강재로 결합하지 않은 것)  *제74류 주1호 (가) 참조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구리 일차제품(괴, 웨이스트, 스크랩, 가루, 플레이크 등) 또는 구리판이나 스트립(제7606호) 등을 원하는 두께로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제외대상> 두께가 0.15mm 초과 한 것(제 7409호), 레이블 (제4911호)등		압연하거나, 주 조, 단조(鍛造)나 전해하여 생산	
220	7411.1 0-0000	구리관 (정제한 구리 로 만든것)	<제외대상> -중공 프로파일(제 7407호) -관 연결구(제7412 호) -플렉시블 튜빙(제 8307호) -특별히 기계의 부 분품 형태로 제작 된 것(제16부)  * '정제한 구리'의 정의는 제74류 주1호 참조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일차 제품의 구 리 또는 스크랩, 전기동 등을 용 해, 주조, 압출, 인발, 절단, 표면 처리하여 관을 만들고 전기분해 등을 통해 정제 과정을 거쳐 생 산	동관(제 7411호) 을 공급 받아 인 발 공정 만 거쳐 생산한 물품은 적용 제 외
221	7412.1 0-0000	정제한 구리 로 만든 관 (管) 연결구류 [예: 커플링 (coupling)·엘 보(elbow)·슬 리브(sleeve)]	"정제한 구리" 정 의는 제74류 주1 (가) 참조"관 연결 구" 정의는 제 7307호 해설서 참 조  <제외대상> 밸브나 탭·콕 등 을 갖춘 연결구류 (제8481호)	한-아세안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제74류 정제한 구리의 반제품을 주조(casting)나 압출의 방법으로 성형하거나, 구리 의 관을 절단· 굽힘 등의 기계 가공을 거쳐 생 산 주조(또는 기 계가공) 등 성형 공정 필수	
222	7413.0 0-0000	구리로 만든 연선·케이블 (전기 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두 줄 이상의 구 리선을 꼬아서 하나의 도선으로 만든 것  <제외대상> 전기절연전선(제 8544호)	한-중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반제품 형상의 구리를 용해하여 일정 굵기로 압 출한 후 꼬아주 는 공정을 통해 생산	
223	7502.1 0-9000	합금하지 않 은 니켈의 피 (기타)	<제외대상> -니켈 가루와 플 레이크(제 7504 호) -전기도금용 니 켈 양극(제7508 호)  *'니켈합금'의 정 의는 제75류 소 호주1 참조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중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니켈광(제2604호) 또는 중간생산물 (제7501호로부터 생산	
224	7502.2 0-0000	니켈 합금 피	니켈-합금*의 잉 곳이나 큐브 등 의 형상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중 FTA,	니켈광(제2604호) 또는 중간 생산 물(제7501호)로부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제75류 소호주1 (나) 참조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터 생산 제7503호(웨이스트)원재료로 사용 가능	
225	7601.20-1000	합금알루미늄괴 [캐스팅얼로이 (castingalloy)]	<제외대상> -알루미늄 가루와 플레이크(제7603호) -알루미늄을 소결하여 얻어진 서멧(제8113호)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알루미늄 스크랩(제7602호), 알루미늄 코일(제7606.92호) 등을 원재료로 합금(용해, 주조) 공정을 통해 생산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제7601.10호)을 재료로 생산시 적용 제외
226	7601.20-2000	빌렛(billet)	<제외대상> -알루미늄 가루와 플레이크(제7603호) -알루미늄을 소결하여 얻어진 서멧(제8113호)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알루미늄 스크랩(제7602호), 알루미늄 코일(제7606.92호) 등을 원재료로 합금(용해, 주조) 공정을 통해 생산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제7601.10호)을 재료로 생산시 적용 제외
227	7604.21-0000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중공프로파일 *제76류 주1(나) 및 소호주 1(나) 참조 <제외대상> -구조물(다리, 탑, 지붕 등)용으로 가공한 것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제7601호를 주요 원재료로 압출하여 생산 반제품 형태의 알루미늄을 압출, 인발, 주조, 단조하여 생산하거나 빌렛 등을 절삭가공한 후 표면처리 등을 통해 생산	
228	7604.29-9000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봉과 프로파일(profile)[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제외]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봉과 프로파일(profile)[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제외] *제76류 주1(나) 및 소호주 1(나) 참조 <제외대상> -구조물(다리, 탑, 지붕 등)용으로 가공한 것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제7601호를 주요 원재료로 압출하여 생산 반제품 형태의 알루미늄을 압출, 인발, 주조, 단조하여 생산하거나 빌렛 등을 절삭가공한 후 표면처리를 통해 생산	
229	7606.1	알루미늄의	<제외대상>	한-아세안 FTA,	알루미늄 일차제	알루미늄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2-0000	판·시트(sheet)·스트립[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두께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 모양인 것)]	-두께 0.2mm 이하인 것(제7607호) -익스팬디드 메탈(제7616호) -두께가 폭의 1/10 초과한 것  *‘알루미늄 합금’의 정의는 제76류 소호주 제1호 참조	한-인도 CEPA, 한-중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폼(괴, 웨이스트, 스크랩, 가루, 플레이크 등)을 가열하여 롤 사이에 통과시켜 원하는 두께로 압연하거나, 연속적으로 주조하여 냉간압연하는 방법으로 생산	늄 판·시트·스트립에 플라스틱 필름 합지 또는 도포 공정을 거쳐 된 경우 적용 제외
230	7606.92-0000	알루미늄의 판·시트(sheet)·스트립[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두께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 모양인 것은 제외)]	<제외대상> -두께 0.2mm 이하인 것(제7607호) -익스팬디드 메탈(제7616호) -두께가 폭의 1/10 초과한 것  *‘알루미늄 합금’의 정의는 제76류 소호주 제1호 참조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알루미늄 일차제품(괴, 웨이스트, 스크랩, 가루, 플레이크 등)을 가열하여 로울 사이에 통과시켜 원하는 두께로 압연하거나, 연속적으로 주조하여 냉간압연하는 방법으로 생산	제7606호의 해당하는 원재료로 플라스틱 합지 공정만 거치는 경우 적용 제외
231	7607.11-9000	뒷면을 보강하지 않은 알루미늄의 박(箔)[보강재 두께는 제외하고 0.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은 제외)]	<제외대상> -스탬프용 박(제3212호) -식품 밀봉용으로 종이(본질적 특성)에 결합된 알루미늄 박(제4811호) -인쇄된 알루미늄 레이블(제4911호) -크리스마트리용 박(제9505호) -두께가 0.2mm 초과한 것(제7606호)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중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알루미늄 일차제품(괴, 웨이스트, 스크랩, 가루, 플레이크 등) 또는 알루미늄 판이나 스트립(제7606호) 등을 가열하여 로울 사이에 통과시켜 원하는 두께로 압연하거나, 연속적으로 주조하여 냉간압연하여 생산	
232	7607.19-1000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이상인 것	에어컨 및 공조기에 열교환기판 재료 쓰이는 알루미늄 박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제7606호를 주요 원재료로 압연·세척·열처리·텐션 레버링 등의 과정을 통해 생산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233	7607.20-9000	뒷면을 보강한 알루미늄의 박(箔) [보강재 두께는 제외하고 0.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은 제외)]	종이나 플라스틱 등으로 뒷면을 보강한 알루미늄의 박(箔) <제외대상> -스탬프용 박(제 3212호) -식품 밀봉용으로 종이(본질적 특성)에 결합된 알루미늄 박(제 4811호) -인쇄된 알루미늄 레이블(제 4911호) -크리스마스 트리용 박(제9505호) -두께가 0.2mm 초과한 것(제 7606호)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알루미늄 일차제품(피, 웨이스트, 스크랩, 가루, 플레이크 등) 또는 알루미늄 판이나 스트립(제 7606호) 등을 가열하여 로울 사이에 통과시켜 원하는 두께로 압연하거나, 연속적으로 주조하여 냉간압연하는 방법으로 생산	
234	7608.20-0000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관(管)	-"알루미늄 합금"의 정의는 제76류 소호주 제1(나) 참조 -"관"의 정의는 제76류 주1(마) 목 참조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제76류 알루미늄 일차제품이나 반제품을 압출하거나, 주조(casting) · 단조(forging) 등의 방법으로 성형한 후 절단·코팅 등의 마무리 공정을 거쳐 생산-압출(extrusion) 등 성형공정 필수	
235	7610.90-9000	알루미늄으로 만든 구조물의 부분품	알루미늄 재질의 구조물(건물, 탑, 다리 등)을 구성하는 부품 <제외대상> -수상구조물(제89류) -조립식 건축물(제9406호) -제16부(기계)·제17부(수송기기)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알루미늄 일차제품(피, 웨이스트, 스크랩, 가루, 플레이크 등)을 성형하여 주조하거나 붓이나 관, 판재 등을 절단, 가공하여 생산	